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13조에 대한 해설서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2023년 2월 28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목차

목차.....	3
일러두기	5
I. 일반 원칙	6
A. 협약 제13조의 의미	6
1.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	7
2. 국가당국	11
3. 실효적 구제	12
B. 협약 제13조의 범위	18
C. 협약 제13조가 적용되는 행위	20
1. 행정부의 행위	20
2. 입법부의 행위	20
3. 사법부의 행위	21
4. 사인(私人)의 행위	22
II. 협약 제13조 및 협약과 그 의정서의 기타 실체적 조항	23
A.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23
생명권 침해 주장	23
a. 일반 원칙	23
2.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	24
3. 보상	24
4. 정보 접근	25
a. 예시	25
B. 제3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26
1. 고문 혐의	26
a. 일반 원칙	26
2.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	27
3. 보상	27
a. 예시	28
4. 구금 환경	29
a. 일반 원칙	29
5. 예방적 구제조치	30
6. 보상적 구제조치	30
a. 예시	31
7. 망명, 추방 및 범죄인 인도	32
a. 일반 원칙	32
b. 예시	33
C. 제4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35
D. 제5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36
1. 제5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36
2.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37
E. 제6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38
1.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38

a.	일반원칙	38
2.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 침해	38
3.	예방적 구제조치 및 보상적 구제조치	39
b.	예시	42
4.	형사 소송 기간	42
5.	민사 소송 기간	42
6.	행정 절차 기간	43
7.	집행 절차 기간	43
8.	제6조제2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43
F.	제7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44
G.	제8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44
1.	사생활에 관한 권리 존중	45
a.	이동의 자유	45
b.	직무행위	45
c.	구금	45
d.	환경	46
e.	파산	46
f.	법률사무소	46
g.	성적 지향	46
h.	명예	47
i.	체류	47
j.	비밀감시 및 개인정보 보존	47
k.	개인 정보 이용 및 공개	48
2.	가족 생활에 대한 존중	49
3.	주거에 대한 존중	50
4.	통신에 대한 존중	51
5.	망명 및 추방	51
H.	제9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53
I.	제10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54
J.	제11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56
K.	제1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57
L.	제34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58
M.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58
N.	제1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61
O.	제1의정서 제3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62
P.	제4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64
Q.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65
R.	제12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67
S.	협약 제13조 및 제46조	67
1.	시범 판결 절차	68
2.	판결의 집행	69

인용 판례 목록..... 71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13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ęd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I. 일반 원칙

협약 제13조 -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

HUDOC 주제어

실효적 구제(13) - 국가당국(13) -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13)

A. 협약 제13조의 의미

1. 협약 제13조는 “체약국은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해 [본] 협약 제13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 이행 및 집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국가당국에 두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 인권 보호 제도에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충성은 협약 제13조와 제3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¹(*Cocchiarella v. Italy* [GC], 2006, § 38;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40). 국내 구제조치를 소진하지 못한 제35조제1항 관련 판례에는 *Mendrei v. Hungary* (dec.), 2018(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헌법적 구제), *Saygili v. Turkey* (dec.), 2017(명예보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Atanasov and Apostolov v. Bulgaria* (dec.), 2017(구금환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예방적 및 보상적 구제), *Di Sante v. Italy* (dec.), 2004(“핀토법”에 근거하여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항고) 등 실효적 구제에 관한 다양한 구체적 사례가 있다.

2. 유럽인권협약에 관한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에서 볼 수 있듯이,² 제13조의 목적은 국제 기구를 통해 재판소에 청구하기 전, 협약상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국가 차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Kudta v. Poland* [GC], 2000, § 152). 따라서 제13조는 원칙적으로 협약 조항의 실질적 위반에 대한 청구와 관련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국가 법체계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직접 언급하며 개인이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ibid.*, § 152).

3. 제13조를 완전히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구조적으로 국가 법체계 안에서 먼저 해결했어야 할 청구를 재판소에 회부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외 모두에서 협약으로 형성된 인권 보호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Kudta v. Poland* [GC], 2000, § 155). 협약은 이론에 불과한 허상의 권리가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국내 구제조치의 존재와 기능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으면 제13조에 명시된 보장은 약화되고 허상으로 끝날 수 있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92).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국내 구제조치를 적용한 결과에 대한 모든 감독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Prince Hans-Adam II of Liechtenstein v. Germany* [GC], 2001, § 45; *Riccardi Pizzati v. Italy* [GC], 2006, § 82).

¹ 특히 국내 구제조치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리적격 기준에 대한 실무 해설서\(Practical Guide on Admissibility Criteria\)](#) 참조.

² 유럽인권협약 “준비문서” 모음집, vol. II, pp. 485 & 490, 및 vol. III, p. 651.

4. 제13조 단독으로 혹은 제13조를 다른 조항과 결합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국내 구제조치를 적용하지 못한 청구인은 제13조에 의지할 수 없다(*Slimani v. France*, 2004, §§ 39-42; *Sultan Öner and Others v. Turkey*, 2006, § 117).
 5. 제13조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이 국가 당국 앞에서 실효적 구제조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영문본에는 “부여(grant)” (“octroi”)라는 단어 대신 “모든 사람은 ... 실효적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everyone...shall have an effective remedy)”라고 명시되어 있다.
 6. 제13조는 “관할 국가당국”의 국내적 구제를 통해 협약에 따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처리하여(*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1988, § 52; *Powell and Rayner v. the United Kingdom*, 1990, § 31; *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288;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2012, § 78;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 148),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계약국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Vilvarajah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1, § 122; *Chahal v. the United Kingdom*, 1996, § 145;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1999, § 135).
 7. 그러나 제13조는 계약국에 부여된 재량을 고려하여 특정 형태의 구제조치를 강제하는 데에 이르지 않는다(*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90).
- 또한 제13조는 국내법에 협약을 통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1999, § 135). 그러나 당사국은 현재 협약을 자국 법체계에 모두 통합했기 때문에 재판소의 판례가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8. 제13조는 청구인에게 제3자를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아낼 권리 또는 “사적 복수”를 취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 147).
 9. 제13조 및 기타 협약 조항의 요건은 단순한 의향서나 합의서가 아닌 보장의 형식을 취한다(*Čonka v. Belgium*, 2002, § 83; *Gebremedhin [Gaberamadhien] v. France*, 2007, § 66; *Singh and Others v. Belgium*, 2012, § 98; *A.C. and Others v. Spain*, 2014, § 95; *Allanazarova v. Russia*, 2017, § 97). 이는 협약의 모든 조항에 내재된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결과이다.

1.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

10. 제13조는 개인이 협약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청구(청구의 합당함과 무관하게)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협약의 관점에서 청구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1988, § 52; *Maurice v. France* [GC], 2005, § 106).
11. 제13조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법 질서에서 보장되는 협약의 권리와 자유의 본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제 수단이 국가 차원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한다(*Rotaru v. Romania* [GC], 2000, § 67). **제13조는**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고, 협약과 의정서의 다른 실체 조항을 보충한다(*Zavoloka v. Latvia*, 2009, § 35 (a)). 이는 위반이 주장된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다른 조항(들)과 결합하거나 또는 그에 비추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13조를 원용하려면 청구인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12. 청구인이 협약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제기한 경우, 국내 법체계를 통해 실효적 구제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Costello-Roberts v. the United Kingdom*, 1993, § 39;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138).
13. **재판소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개념에 추상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법적 쟁점 또는 제기된 문제를 고려하여, 제13조에 근거한 청구를 구성하는

위반 사항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와 관련하여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1988, § 55; *Plattform "Ärzte für das Leben" v. Austria*, 1988, § 27; *Esposito v. Italy* (dec.), 2007).

14. **해당 청구 건이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 이견이 없는 경우**, 재판소는 제1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Vilvarajah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1, § 121; *Chahal v. the United Kingdom*, 1996, § 147).

15. 재판소가 제13조에 근거하여 국내 구제권이 발동된 청구에 대해 협약 또는 의정서 **조항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 재판소는 제13조 청구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어린 피구금자 및 임신부가 경찰 구금 중 학대 당한 건에 대한 소송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간 제한 상의 이유로 가해자가 무죄 석방되었던 *Bati and Others v. Turkey*, 2004 (§ 138)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제3조에 근거하여 고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제13조에 따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이었다.

가택수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관한 *Camenzind v. Switzerland*, 1997 (§ 53) 사건에서는 재판소가 해당 수색이 제8조에 규정된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제8조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6. 청구인이 다른 조항과 연계하여 제13조를 원용하고 그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이전에 청구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경우, 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국내 법원에 제시하고 재판소에 다시 제시한 모든 사실과 주장(*Stelian Roșca v. Romania*, 2013, §§ 93–95), 재판 전 기간에 대한 재판 전 조사와 사실심의 결과(*Hiernaux v. Belgium*, 2017, § 44), 국내 법원이 인정한 청구인의 열악한 구금 환경(*Barbotin v. France*, 2020, § 32) 등을 참작하여,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7. 재판소는 **일응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절차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관한 사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재판소는 먼저 제13조에 따른 청구를 처리한 다음 제6조제1항의 청구를 처리했다. *Panju v. Belgium*, 2014 (§ 52) 사건에서 재판소는 합리적인 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 사법조사 기간에 대한 청구가 일응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사법 조사 기간이 11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실효적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민사소송이 16년 이상 지속된 *Sürmeli v. Germany* [GC], 2006, § 102 사건, 민사소송이 9년 이상 지속된 *Valada Matos das Neves v. Portugal*, 2015, § 74 사건, 행정소송이 18년 이상 지속된 *Olivieri and Others v. Italy*, 2016, § 48 사건, 형사소송이 14년 이상 지속된 *Brudan v. Romania*, 2018, § 70 사건 참조).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이 협약 제3조에 근거하여 국내 법원에 일응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1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Yengo v. France*, 2015 (§ 64) 사건에서 재판소는 독립된 국가당국이 구금 환경을 심사하기 위해 긴급하게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는 제3조에 비추어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제3조 위반 문제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다.

18. **청구의 심리적격이 인정되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137)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8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동 조항에 근거한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19. 또한 **청구의 심리부적격은 제13조를 적용할 수 없거나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1988 (§ 54) 사건에서 재판소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상 어떻게 “명백히 근거 없는” 청구가 “논쟁 가능”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명백히 근거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면 기본적으로

피청구국에 대한 청구에 합당한 일말의 근거도 없다는 의미이다(*Airey v. Ireland*, 1979, § 18; *Gökçe and Demirel v. Turkey*, 2006, §§ 69-70 참조).

Powell and Rayner v. The United Kingdom, 1990 (§ 33) 사건에서 재판소는 실제적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히, 위원회의 심리적격 결정과 근거를 감안하여 제기된 법적 쟁점의 성격과 특정 사실을 심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청구를 심리부적격으로 각하하기 전에 청구와 청구의 근거가 된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청구에 반드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1988, §§ 68-76 및 79-83; *Plattform “Ärzte für das Leben” v. Austria*, 1988, §§ 28-39 참조). 따라서 재판소는 각 실제적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회부된 소송의 맥락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 및 법률 문제를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제기된 청구 대한 위원회의 심리적격 결정은, 본문과 근거 부분에서, 제13조의 목적에 따른 논쟁의 여지에 대한 유용한 신호가 된다.

Walter v. Italy (dec.), 2006 사건에서는 피청구국에 대한 청구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근거 없음이 명백하여 실제적 청구가 각하됐다. 따라서 제13조는 적용되지 않았고, 청구의 이 부분은 협약 조항과 물질 관할권(*ratione materiae*)을 양립할 수 없었다.

Al-Shari and Others v. Italy (dec.), 2005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실적 요소를 참작하고 원용된 실제적 조항에 근거하여 제13조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따라서 제13조는 적용되지 않았고 청구의 이 부분은 “명백히 근거 없”으므로 각하되었다.

Kiril Zlatkov Nikolov v. France, 2016 (§§ 71-72) 사건에서 재판소는 “명백히 근거 없”지 않더라도 협약 제35조제3항제(b)호의 의미상 심각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청구가 제13조 판례법의 의미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또한 *Kudlička v. the Czech Republic* (dec.), 2015 참조). 따라서 제13조는 적용되지 않았고 청구의 이 부분은 명백히 근거가 없었다.

20. **협약의 다른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이 제13조 적용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Camenzind v. Switzerland*, 1997, § 53;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130, 137 및 142; *Nuri Kurt v. Turkey*, 2005 § 117; *Ratushna v. Ukraine*, 2010, § 85). 제13조는 그 문구에도 불구하고 협약(1978, § 64)의 다른 조항(소위 “실체적” 조항 중 하나)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 § 64). 개인이 먼저 이러한 취지로 “국가당국”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 “당국” 앞에서 위반을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협약 위반은 제13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제13조는 국가 법체계에서 실효적 구제조치를 통해 협약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이익을 제기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205). 따라서 재판소가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더라도 제13조의 목적상 소송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Valsamis v. Greece*, 1996, § 47; *Ratushna v. Ukraine*, 2010, § 85).

D.M. v. Greece, 2017 (§ 43) 사건에서 비록 재판소는 청구인의 구금 환경을 참작하여 협약 제3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청구가 일응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하지는 않았다. 재판소는 사건 본안을 심사한 후에야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13조의 목적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19) 사건에서 협약 제2조에 근거한 청구는 심리적격을 인정 받았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제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는 본안 심사가 필요한 심각한 사실 및 법률 문제를 제기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관련 청구가 협약 제13조의 목적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Zavoloka v. Latvia, 2009 (§§ 38-39) 사건에서 협약 제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재판소의 별도 판결만으로 제13조의 목적상 청구의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모든 사건 정황을 참작하고 제3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2조 위반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보였다(또한 *Younger v. the United Kingdom* (dec.), 2003 교도소 내 자살 사건 참조). 따라서 재판소는 제2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1. **실체적 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실을 고려할 때 제13조에 근거한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Al-Shari and Others v. Italy* (dec.), 2005; *Walter v. Italy* (dec.), 2006). 따라서 제13조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Halford v. the United Kingdom, 1997 (§§ 69-70)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집 전화로 전화한 것은 제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일부 감시 조치가 제8조에 위배된다며 제출한 증거는 제13조의 의미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라는 판결을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 집전화에 대해 제기한 청구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Çaçan v. Turkey, 2004 (§ 80)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경수비대가 자신의 집과 소지품을 파괴했다며 제기한 청구에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여 협약 제3조 및 제8조 또는 제1의정서 제1조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청구인이 국경수비대의 위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13조의 목적상 논쟁의 여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101-102) 사건에서 재판소는 구체적인 상황과 가용 증거를 참작했을 때 제8조와 제1의정서 제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가 존재하지 않아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2. 제13조의 목적상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려면, 재판소는 **심리 과정에서 다른 조항의 위반을 발견하지 못한 점**(*Halford v. the United Kingdom*, 1997, § 68; *Hüsniye Tekin v. Turkey*, 2005, § 55; *Russian Conservative Party of Entrepreneurs and Others v. Russia*, 2007, § 90; *Galanopoulos v. Greece*, 2013, § 49),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드러난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Söylemez v. Turkey*, 2006, § 112; *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1988, § 52; *Kaya v. Turkey*, 1998, § 107; *Yaşa v. Turkey*, 1998, § 113 대조), **다른 조항의 적용 불가능성**을 참조할 수 있다(*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 59).

Russian Conservative Party of Entrepreneurs and Others v. Russia, 2007 (§ 90) 사건에서 세 번째 청구인이 제기한 투표권 침해 소송에 논쟁의 여지가 없고 제1의정서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하여 해당 청구인에 대해 제13조를 적용할 수 없었다.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 59) 사건에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조치가 국내법에 부족하다는 청구와 관련하여, 국내법에서 인정되고 청구인들이 적용한 협약 권리와 해당 판결의 연관성은 협약 제6조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매우 취약하고 거리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판결 이유는 거리감을 근거로 협약 제2조 또는 제8조 위반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제13조에 근거한 구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1997 (§ 42)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제13조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23. 재판소는 또한 제13조에 관한 단일 청구만 있을 경우 심리적격을 인정했다(*Chizzotti v. Italy* (dec.), 2005). 또한 재판소는 다른 사건(2006, §§ 39-40)에서 유추하여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른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고, 제1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Chizzotti v. Italy*, 2006, §§ 39–40).

2. 국가당국

24. 제13조는 개인이 협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가 “당국” 앞에서 자신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고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조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 § 64;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3, § 113; *Leander v. Sweden*, 1987, § 77 (a)).

25. 유럽인권협약에 관한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에 따르면³, **사법 또는 비사법 기관** 모두 실효적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국가당국이 될 수 있다.

26. 재판소는 사법 당국의 구제를 필수 조치로 판단할 수 있다. *Ramirez Sanchez v. France*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장기간 독방 감금이 재소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참작하여, 국내법에서는 절차 준수 또는 본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법 기관이 실효적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은 테러리스트를 8년 이상 독방에 감금하기로 한 결정은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27. 반면 재판소는 또한 사법적 구제를 통해 독립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접근권 및 제13조 요건에 따른 보상금 집행 가능성이 강화되더라도 실효적 구제에 **사법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보일 수 있다(*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 § 67; *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9;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10).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10–1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지방 당국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을 돌보지 못한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서만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지방 당국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방지하지 못했으며 제기한 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이 적절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수단 또는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실효적 구제조치를 보장 받지 못했으며 이는 협약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

28. 제13조에 언급된 “당국”이 **항상 엄밀한 의미에서 사법 기관이거나 협약 제6조제1항 및 제5조제4항에서 의미하는 재판소일 필요는 없다**(*Golder v. the United Kingdom*, 1975, § 33; *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 § 67; *Rotaru v. Romania* [GC], 2000, § 69; *Driza v. Albania*, 2007, § 116).

옴부즈맨과 같은 준사법 기관(*Leander v. Sweden*, 1987), 정부 각료와 같은 행정 기관(*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1988) 또는 의회위원회와 같은 정치 기관(*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도 국가당국이 될 수 있다.

29. 그러나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권한과 제공되는 보호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 § 67;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3, § 113 (b); *Kudła v. Poland* [GC], 2000, § 157; *Mugemangango v. Belgium* [GC], 2020, § 67). 재판소는 비사법 “당국”이 독립 기구인지(*Leander v. Sweden*, 1987, §§ 77 b) 및 81; *Khan v. the United Kingdom*, 2000, §§ 44–47), **청구인에게 보호 절차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한다** (*Chahal v. the United Kingdom*, 1996, §§ 152–154;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2012, § 79; *Allanazarova v. Russia*, 2017, § 93).

³ 유럽인권협약 “준비문서” 모음집, vol. II, pp. 485 & 490, 및 vol. III, p. 651.

Khan v. the United Kingdom, 2000 (§§ 45-47) 사건에서는 영국 경찰민원소(Police Complaints Authority)에 청구를 회부하여 지서장에게 경찰관의 행동을 조사할 재량권을 주었다. 또한 국무장관이 경찰민원소 직원을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 해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청구 조사 제도가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13조의 의미상 실효적 구제조치를 제공하지 못했다.

30. 비사법 기구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재소자의 통신 감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에 관하여, 예를 들어 결정을 강제 집행할 수 없거나 수감되지 않은 자의 청구를 받을 수 없는 방문자위원회(Board of Visitors)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보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3, §§ 114-115). 옴부즈맨과 법무장관(Chancellor of Justice) 형사 또는 징계 절차를 시행할 권한은 있지만, 비밀 보안 검사 제도에서 관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Leander v. Sweden*, 1987, § 82; *Segerstedt-Wiberg and Others v. Sweden*, 2006, § 118).

Chahal v. the United Kingdom, 1996 (§ 15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특히 법적 대리인으로써 자격이 없고, 자문단은 결정권이 없으며, 자문단이 내무장관에게 하는 자문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개되지 않는 등 테러 용의자의 추방 명령을 심사하는 자문단에 의한 비사법 절차의 결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경우 자문단은 제13조의 목적상 보호 절차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문 권한만 있는 위원회는 실효적 구제조치로 간주될 수 없다. *Zazanis v. Greece*, 2004 (§ 47) 사건에서 문제의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조건에서 소집될 수 있고 자문 권한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행정부에 의한 최고행정법원 판결 미집행에 관한 모든 판단은 행정부에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

31. 문제가 된 지침을 발행한 정치 기관은 심사 당국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심사가 될 수 있다. 통신 통제 조치가 수행된 명령 또는 지침의 유효성에 관한 청구를 처리하는 경우, 제13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독립적 관점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주무장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3, § 116).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의 조치가 이들 지시를 잘못 적용한 결과라는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3. 실효적 구제

32.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문제가 된 상황을 직접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Pine Valley Developments Ltd and Others v. Ireland*, 위원회 결정, 1989; 또한 본 해설서의 [협약 제13조의 범위](#) 참조).

33. 협약은 필요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제13조에 따른 협약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에 관해 **체약국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Kaya v. Turkey*, 1998, § 106). 제13조 나아가 협약 전반은 체약국이 국내법에서 협약 조항을 실효적으로 시행할 방식을 특정하지는 않는다(*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3, § 113;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7). 그러나 문제가 된 권리의 특성에 따라 국가가 제13조(2008, § 191)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구제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91). 또한, 본 해설서의 [협약 제13조의 범위 및 협약 제13조 및 협약과 그 의정서의 기타 실제적 조항](#) 참조.

34. 사건을 판결하는 국내 당국이 협약 소송 본안을 심사해야 한다(*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1999, § 138; *Peck v. the United Kingdom*, 2003, §§ 105-106; *Hasan and Chaush v. Bulgaria* [GC], 2000, § 100;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141; *Glas Nadezhda FOOD and Elenkov v. Bulgaria*, 2007, § 69;

Boychev and Others v. Bulgaria, 2011, § 56). 그리하여 각 청구별로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구제조치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 본안을 포함해야 한다. 관련 당국 또는 법원이 소송을 재구성하거나 협약 위반 혐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경우, 구제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Glas Nadezhda EOOD and Elenkov v. Bulgaria*, 2007, § 69).

Hasan and Chaush v. Bulgaria [GC], 2000 (§ 100) 사건에서 대법원은 협약 제9조에 근거한 소송의 본안 심사를 거부하고 이를 종교단체 내부조직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추정하고 종파의 헌법과 리더십 지도부 등록 여부 결정 시 내각에서 무제한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관할 기관이 무슬림 단체의 지도부와 헌법 변화를 규정한 법령을 발표했는지를 묻는 형식적인 질문만 처리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되지 못했다.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2001 (§ 138)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교단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몰도바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와 다른 별개의 교회에 모여 자신들의 종교를 공동으로 표명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청구권을 요구한 청구인들의 청구에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한 베사라비아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대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141, *Glas Nadezhda EOOD and Elenkov v. Bulgaria*, 2007, §§ 68-70 사건 참조.

35. 구제조치의 실효성은 구체적으로 평가된다(*Colozza and Rubinat v. Italy*, 위원회 결정, 1982, pp. 146-147). 청구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명백히 뒤늦게 궤석절차가 협약 제6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심에서 파기원(Court of Cassation)은 동 청구를 심사하여 궤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제공되었다.

36. 제6조의 요건이 협약 제13조의 목적상 구제의 실효성 평가에 적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평등의 원칙을 포함한 공정성의 기본 기준은 실효적 구제조치의 구성요소이다. 구제는 청구인이 협약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실효적이라고 볼 수 없다(*Csüllög v. Hungary*, 2011, § 46).

37. "실효적"이라는 용어는 구제조치가 충분하고 접근 가능하고 즉시성 의무를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Paulino Tomás v. Portugal* (dec.), 2003; *Çelik and İmret v. Turkey*, 2004, § 59). 구제는 협약 위반에 대한 청구 제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38.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 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가택수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관한 *Camenzind v. Switzerland*, 1997 (§ 54) 사건에서 해당 결정으로써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영향을 받는 당사자만 연방법원 기소부에 청구를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가택수색 중단으로 청구인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수색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다. 재판소는 전화 통화 감청과 녹음에 관한 청구만 고려했으나, 구제조치는 제13조의 의미에서 "실효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39. 구제조치는 관련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Petkov and Others v. Bulgaria, 2009 (§ 82) 사건에서 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건을 회부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또한 관련 당사자가 직접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조치에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후자가 주주 대표를 통해 중재재판소에서 법정 집단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한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협약 제13조보다 엄격한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207).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법정 대리인이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Margareta and Roger Andersson v. Sweden*, 1992 (§ 101)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12세 자녀를 대신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만남을 제한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40. 국내 구제조치에는 신속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Kadiķis v. Latvia (no. 2)*, 2006, § 62).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구제조치는 적당하지도 실효적이지도 않다(*Pine Valley Developments Ltd and Others v. Ireland*, 1991, § 47; *Payet v. France*, 2011, §§ 131-134).

Kadiķis v. Latvia (no. 2), 2006 (§§ 62-63)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이 15일 동안 수감되어 있었고 관할 당국의 청구 또는 소송 응답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15일 또는 30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맥락에서 *Wasserman v. Russia (no. 2)*, 2008, § 55-58 (집행정지 기간 결정에 2년 반 이상 소요) 및 *Vidas v. Croatia*, 2008, § 37 (민사소송 기간 결정에 3년 15일 소요) 사건 참조.

그러나 *Kaić and Others v. Croatia*, 2008 (§ 41)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집행 또는 집행 지연이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을 수반하지 않고 정당성을 갖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절차 기간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특히 중요하게 감안하여 정부는 6개월 지연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41. 발생 가능한 손해의 특성과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13조의 목적을 위해서는 집행정지 권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Özgür Radyo-Ses Radyo Televizyon Yayın Yapım Ve Tanıtım A.Ş. v. Turkey (no. 1)*, 2006, § 94; *Jabari v. Turkey*, 2000, § 50 대조). *Özgür Radyo-Ses Radyo Televizyon Yayın Yapım Ve Tanıtım A.Ş. v. Turkey (no. 1)*, 2006(§ 94) 사건에서 라디오와 TV 방송국의 활동을 관리하는 독립 행정당국인 RTÜK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청구인 기업의 위법 활동이 확인되자 영업을 금지시켰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 기업집행유예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치 집행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13조를 충실히 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목적국에서 심각하고 이미 입증된 고문 또는 기타 학대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외국인의 추방 및 범죄인 인도 관련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 *Allanazarova v. Russia*, 2017 (§§ 100-115) 사건에서 재판소는 러시아 법이 따른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항소에 자동 집행정지 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여성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학대 위협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협약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42. 사후 구제조치는 실효성을 갖기 위한 충분한 조치일 수 있다. *M.S. v. Sweden*, 1997 (§§ 55-56)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공당국이 자신의 동의 없이 기밀성 개인 및 의료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법원에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업무상 기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보 공개의 제한성과 다양한 보호장치, 특히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Office)의 기밀 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고려할 때 제13조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사후 구제조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재판소는 예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따라서 사후 구제) 주최자가 공공 행사 불허 결정에 대해 사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 협약 위반에 대해 만족스러운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협약 제1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 81-84; *Alekseyev v. Russia*, 2010, §§ 97-100;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2017, §§ 342-361).

43. 재판소는 관련 협약당사국의 법체계에 공식 구제조치가 있는지 여부와 이들 구제조치가 작동하는 일반적인 법적 및 정치적 맥락뿐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 사정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Akdivar and Others v. Turkey*, 1996, § 69). 이들 원칙은 협약 제35조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A.B. v. the Netherlands*, 2002 (§ 98) 사건에서 재판소는 먼저 심각한 교도소 부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적절한 시정 활동 부재를, 그리고 EU 고문방지위원회(CPT)의 긴급 권고안 불이행을 참작했다. *Orhan v. Turkey*, 2002 (§ 392)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당시 국경수비대와 PKK가 격렬히 대립하던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의 상황을 참작했다. *Aydin v. Turkey*, 1997 (§ 107) 사건에서 재판소는 구금 중 국가 공무원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조사할 때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검찰당국의 지시로 검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독립적 의료인이 적절한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검사해야 했다.

그러나 피청구국은 부족한 구제조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정치적 맥락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Cyprus v. Turkey* [GC], 2001, § 193). 피청구국 정부는 키프로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한 해결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난민은 북부 키프로스에서 있는 집과 재산으로 돌아가거나 “TRNC” 당국에 귀속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있음이 명백하다고 대응했다.

44. 제13조에 규정된 구제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효과적”이어야 한다(*Menteş and Others v. Turkey*, 1997, § 89; *İlhan v. Turkey* [GC], 2000, § 97).

Vereinigung demokratischer Soldaten Österreichs and Gubi v. Austria, 1994 (§ 53), *Doran v. Ireland*, 2003 (§§ 68-69) 및 *Djavit An v. Turkey*, 2003 (§ 73) 사건에서 정부는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예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Iovchev v. Bulgaria, 2006 (§§ 145-148)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구금 환경으로 인해 비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각하하고 보상을 거부했다. 국가손해배상책임법(State Responsibility for Damage Act)에 근거한 소송이 원칙적으로 이와 관련된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표시는 없었다.

45. 특히, 피청구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구제조치 집행이 부당하게 방해받으면 안 된다(*Aksoy v. Turkey*, 1996, § 95 끝부분; *Aydin v. Turkey*, 1997, § 103;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96). 따라서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당사자가 자유롭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법정 접근을 방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Matos e Silva, Lda., and Others v. Portugal*, 1996, § 64).

제13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는 승인 시 관할 당국의 구제조치 집행을 보장할 의무가 포함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제3항(c)호 비교). 제13조가 구제를 받을 권리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지만 사용된 구제조치의 집행을 성공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구제조치 집행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체약국이 협약 비준 시 약속한 법치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Kenedi v. Hungary*, 2006, § 47; *Kaić and Others v. Croatia*, 2008, § 40).

46.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이 발효되려면 청구인이 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에 실효적 구제조치가 존재해야 한다(*Stoica v. Romania*, 2008, § 104). 그러나 이 원칙은 사건별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Baumann v. France*, 2001, § 47). 재판소는 국가 차원에서, 신법(특히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법)의 침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법)이 소급 적용 조항과 함께 도입되어 이전까지 국내 법체계에서 존재하던

모든 제도적 문제에 중지부를 찍은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Charzyński v. Poland* (dec.), 2005, §§ 40-41; *İçyer v. Turkey* (dec.), 2006, §§ 83-84; *Ismayilov v. Azerbaijan*, 2008, § 38).

47. 이후 판례법 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실효성을 확립해야 한다(*Khider v. France*, 2009, §§ 142-145).

Ramirez Sanchez v. France [GC], 2006 (§§ 165-166) 사건에서는 판례법이 변경되어 새로운 구제조치가 마련됐지만 소급 대상이 아니었고 청구인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실효성이 있다고 간주될 수 없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국내법에 청구인이 독방 감금 연장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재한 점을 참작하여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해당 기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었던 구제조치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Peck v. the United Kingdom*, 2003 (§ 102) 사건에서 재판소가 강조했듯이, 재판소의 임무는 관련 법률이나 관행을 추상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맥락을 간과하지 않고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고(또한 *Amann v. Switzerland* [GC], 2000, § 88 참조), 특히 청구인과 관련되어 있는 구제조치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또한 *N. v. Sweden*, 위원회 결정, 1986; *Stewart-Brady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7 참조).

48. 아무리 포괄적으로 추론한다 할지라도(또한 1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사법 판결 한 건만으로 이론적 및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역부족이다(*Sürmeli v. Germany* [GC], 2006, § 113; *Abramciuc v. Romania*, 2009, § 128). 추가 판례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조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Horvat v. Croatia*, 2001, § 44). 따라서 *Martins Castro and Alves Correia de Castro v. Portugal*, 2008 (§§ 56-57) 사건에서 재판소는 최고행정법원에서 나온 판례법이 판결 당시 발견된 판례법 차이의 조화를 통해 포르투갈 법률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은 동안, 비계약적 국가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는 “실효적” 구제조치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49. 그럼에도 재판소는 국내 법원의 관행이 확립되기 전에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심사할 수 있다(*Slaviček v. Croatia* (dec.), 2002; *Nogolica v. Croatia* (dec.), 2002). 확립된 사법적 관행 부재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Charzyński v. Poland* (dec.), 2005 (§ 41) 사건에서 2004년 법이 발효될 당시에는 국내 법원의 사건 지연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4년 법에는 국내 법원에서 소송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협약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내 법원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과 정당한 보상을 주장해야 했다.

50.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실히 제공하는지 여부가 제13조의 목적에 따른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Swedish Engine Drivers' Union v. Sweden*, 1976, § 50; *Kudła v. Poland* [GC], 2000, § 157; *Costello-Roberts v. the United Kingdom*, 1993, § 40; *Hilal v. the United Kingdom*, 2001, § 78).

제13조의 맥락상 “구제”라는 단어는 실제 청구인을 구제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단순히 청구 본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당국에 접근 가능한 구제를 의미한다(*C.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3). 제13조는 구제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닌 이용 가능성을 보장한다(*R.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4).

사건 정황상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이로 인해 제13조의 목적에 따른 구제조치의 “실효성”은 훼손되지 않는다(*Murray v. the United Kingdom*, 1994, § 100).

명확히 무용한 것이 아닌 특정 구제조치가 성공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Akdivar and Others v. Turkey*, 1996, § 71; *Krasuski v. Poland*, 2005, §§ 69-73; *Scoppola v. Italy (no. 2)* [GC], 2009, § 70;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74).

청구인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결정하기 어렵다(*Swedish Engine Drivers' Union v. Sweden*, 1976, § 50; *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1988, § 67; *Vereinigung demokratischer Soldaten Österreichs and Gubi v. Austria*, 1994, § 55; *Amann v. Switzerland* [GC], 2000, § 89). 따라서 *Amann v. Switzerland* [GC], 2000 (§§ 89-90)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구제조치는 실효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결 관할권을 가진 연방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들 소송을 심사했다.

51. 제13조에서 제공하는 보호장치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반(또는 위반 범주) 주장이 제기된 맥락에는 구제조치에 내재적인 한계가 수반될 수 있다(*Kudła v. Poland* [GC], 2000, § 151). 협약은 전체를 읽고 맥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제13조에 대한 해석은 본문의 논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효적 구제조치” 요건은 상황에 내재된 청구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실효성을 갖춘 구제를 의미한다(*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 §§ 68-69). 같은 맥락에서 *Leander v. Sweden*, 1987, §§ 78-79 사건 참조.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8조(사생활 존중 - 비밀감시 및 개인정보 보존)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52. 국내 법원의 사법 심사 범위는 제13조에 따른 보호 조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 심사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면 제13조에 위배될 수 있다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1999, §§ 136-139;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141-142).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1989 (§§ 121-124) 및 *Vilvarajah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1 (§§ 123-127)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법 심사가 청구인들의 청구에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협약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영국 법원은 제3조의 맥락에서 협약기관에 앞서 청구인들이 근거한 요인에 비추어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 결정의 “합리성”을 심사할 수 있었다.

53. 또한 단일 구제조치로는 제13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국내법에 따라 제공되는 일련의 구제조치를 통해 이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3, § 113 (c); *Leander v. Sweden*, 1987, § 77 (c); *Chahal v. the United Kingdom*, 1996, § 145; *Kudła v. Poland* [GC], 2000, § 157;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2012, § 79).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64)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정 조건에서 일련의 구제조치를 통해 제2조 및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2011, § 338 참조). 이 개념은 제2조 및 제3조의 보상을 제공하는 민사적 구제 및 절차적 측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형사 소송과 같이 순차적 또는 동시에 채택될 수 있고 구제의 다양한 측면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구제조치를 의미한다(*ibid.*, § 337).

Sürmeli v. Germany [GC], 2006 (§§ 102-116)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원의 절차 기간과 관련하여 정부가 총 네 가지 구제조치 중 두 개 이상을 조합하여 제13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판결하지 않았다.

54. 청구 심사권을 가진 법원(민사, 형사, 행정 또는 기타 법원)이 불확실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또는 신속한 메커니즘이 부재한 경우 구제조치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Mosendz v. Ukraine*, 2013 (§§ 122-125) 사건에서 청구인은 아들이 의무 복무 중 학대를 받고 사망한 것에 대해 내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사절차를 각하한 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를 다시 제출했다. 제1심 법원은 청구를 인정했지만, 상소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이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 관할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이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고등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그 결과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 심사를 받지 못하고 실효적 구제도 받지 못했다. 이는 협약 제2조와 제3조에 근거하여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55. 청구인이 기존 국내 구제조치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부는 국가 법원의 관련 판례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 당국의 결정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안한 구제조치 집행 및 실효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Efstratiou v. Greece*, 1996, § 49; *Kudła v. Poland* [GC], 2000, § 159; *Segerstedt-Wiberg and Others v. Sweden*, 2006, § 120; *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110; *Stanev v. Bulgaria* [GC], 2012, § 219). 재판소는 구제조치 시행 시 확실성이 충분했는지 판단한다(*Čonka v. Belgium*, 2002, § 83; *Krasuski v. Poland*, 2005, § 68). 재판소는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구제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거나(*Wille v. Liechtenstein* [GC], 1999, §§ 74-78; *Yarashonen v. Turkey*, 2014, §§ 64-66) 사건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B. 협약 제13조의 범위

56. 제13조에 따른 의무의 범위 또는 정도는 협약에 근거한 소송의 성격(*Chahal v. the United Kingdom*, 1996, §§ 150-151; *Aksoy v. Turkey*, 1996, § 95; *Aydın v. Turkey*, 1997, § 103;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8;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96) 또는 협약에 근거한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Hasan and Chaush v. Bulgaria* [GC], 2000, § 98).

57.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직접 구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ine Valley Developments Ltd and Others v. Ireland*, 위원회 결정, 1989). 제소 수단은 혐의가 제기된 위반 사항을 방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청구인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실효적”으로 간주된다(*Kudła v. Poland* [GC], 2000, § 158; *Ramirez Sanchez v. France* [GC], 2006, § 160). 따라서 실효적 구제조치의 성공적인 결과는 사건에 따라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 무효화, 철회 또는 수정 또는 위반 행위 책임자 조사 또는 배상 또는 제재 부과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해설서의 [협약 제13조 및 협약과 그 의정서의 기타 실체적 조항](#) 참조.

협약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혐의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한 국가 공무원 또는 기관의 책임을 규명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제조치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7).

58. 재판소는 다음 상황에서 “실효적 구제” 개념에 보다 엄격한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 생명권(협약 제2조) 또는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협약 제3조)만큼 중요한 기본권이 쟁점이 된 경우, 제13조 목적상 실효적 구제조치의 개념은 국내 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조치를 침해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금 지급 이외에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와 청구인이 조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수반한다(*Kaya v. Turkey*, 1998, § 107; *Yaşa v. Turkey*, 1998, § 114).

-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에 관한 권리** (협약 제5조)이 쟁점이 된 경우, 예를 들어 아들이 체포된 후 구금 중 실종됐다는 타당한 혐의를 제기한 청구도 마찬가지다(*Kurt v. Turkey*, 1998, § 140).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2조, 제3조 및 제5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그러나 재판소는 또한 국가 또는 그 대리인이 실제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소극적 의무)와 국가가 제3자의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적극적 의무) 필요한 구제조치의 실효성 정도를 구분했다(*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9; *Keenan v. the United Kingdom*, 2001, § 129).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97)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타인의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경우, 제13조가 당국에 항상 혐의를 조사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협약에 근거한 권리 침해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국가 공무원 또는 기관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위반으로 발생한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2조 및 제3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59. 다른 나라로 송환되는 경우 청구인이 협약 제2조, 제3조, 제8조에서 금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엄격한 조사를(*Jabari v. Turkey*, 2000, § 50)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Bati and Others v. Turkey*, 2004, § 136). 또한 청구인이 제2조 또는 제3조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추방 조치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Gebremedhin [Gaberamadhien] v. France*, 2007, § 66;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200). 이 자동 집행정지 효과 요건은 제4의정서 제4조에 근거한 청구에서도 확인되었다(*Čonka v. Belgium*, 2002, §§ 81–83;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206).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3조(망명 및 추방), 제8조(추방) 및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60. 재판소는 협약 제3조에 근거한 열악한 구금 환경, 협약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절차 기간, 그리고 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소송 절차 기간이 청구인의 가족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와 관련하여 구제조치의 효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실효적 구제 즉, 예방적 구제와 보상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6조제1항에 따라 절차 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구인이 국내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 판결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이미 발생한 지연에 대해 소송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의 의미 내에서 “실효적”일 수 있다(*Krasuski v. Poland*, 2005, § 66).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3조 구금 환경(일반 원칙), 예방적 구제 및 보상적 구제; 제6조 1항(예방적 및 보상적 구제), 제8조(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61. 당국이 고의적 작위와 부작위를 통해 의회 후보 출마를 막았다면 제1의정서 제3조를 위반한 것이고,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구제될 수 없다(*Petkov and Others v. Bulgaria*, 2009, § 79).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1의정서 제3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62. 종교의 자유와 같은 상대적 권리의 경우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Hasan and Chaush v. Bulgaria* [GC], 2000, §§ 98–99).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9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감시 조치를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한 본 해설서의 51항 및 제8조(사생활 존중 - 비밀감시 및 개인정보 보존)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63. 제13조는 특정 구제를 보장하는 **협약의 다른 조항과 적용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

협약 제5조제1항의 위반이 쟁점이 된 자유의 박탈 문제에서 협약 제5조제4항과 제5항은 제13조 일반 요건에 대한 특별조항(*lex specialis*)을 구성하고(*Tsirlis and Kouloumpas v. Greece*, 1997, § 73; *Nikolova v. Bulgaria* [GC], 1999, § 69; *Dimitrov v. Bulgaria* (dec.), 2006), 따라서 보다 일반적인 제13조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특정 국내 구제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제5조제4항과 제5항의 관점에서 해당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Ruslan Yakovenko v. Ukraine*, 2015, § 30). 재판소가 해당 특별조항에 비추어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제13조 일반조항(*lex generalis*)에 따라 동일한 쟁점을 재심사할 법익이 없다(*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1971, § 95; *Khadisov and Tsechoyev v. Russia*, 2009, § 162).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외국인에게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권을 보장하는 제7의정서 제1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나아가 특히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협약 제6조제1항은 제13조에 근거한 실효적 구제보다 엄격한 보호장치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민사상 권리와 의무 및 형사 소추에 적용되는 제6조제1항의 보호장치는 제13조의 보호장치를 모두 포함한다(*Airey v. Ireland*, 1979, § 35; *C.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3). 그러나 개인이 제6조제1항에 반해 합리적 기간 내에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당국”에 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Kudła v. Poland* [GC], 2000, § 147).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64.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협약상 권리를 위반한 경우, 재판소는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상황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Hokkanen v. Finland*, 1994, § 74; *McDonnell v. the United Kingdom*, 2014, § 90). *X. and Y. v. the Netherlands*, 1985 (§ 36) 사건에서 충분한 구제조치 부재는 재판소가 제8조 위반 판결을 내린 사유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제13조에 비추어 동일한 질문을 심사할 필요가 없었다.

C. 협약 제13조가 적용되는 행위

65. 제13조는 국내법에 따라 구제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1. 행정부의 행위

66. 원칙적으로 행정부(정부)의 모든 행위는 제13조 적용 범위에 속한다(*Al-Nashif v. Bulgaria*, 2002, § 137). 제13조에는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협약 위반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Wille v. Liechtenstein* [GC], 1999, §§ 76-78).

2. 입법부의 행위

67. 입법부의 행위의 경우, 제13조는 **체약국의 법률이 협약에 반하거나**(*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2)*, 1991, § 61; *Costello-Roberts v. the United Kingdom*, 1993; § 40; *A. v. the United Kingdom*, 2002, §§ 112-113; *Supreme Holy Council of the Muslim Community v. Bulgaria*, 2004, § 107; *Maurice v. France* [GC], 2005, § 107;

Paksas v. Lithuania [GC], 2011, § 114) 또는 협약과 동등한 국내법 규범에 반한다는(*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85) 이유로 국가 당국 앞에서 체약국의 법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책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의 목적 관할(ratione materiae)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의 일부를 각하(*Saccoccia v. Austria* (dec.), 2007) 또는 제1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2005). 마찬가지로, 어떤 일반 정책 그 자체는 제13조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138).

그러나 위원회에 따르면 이민 규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1985, § 92). 이용 가능한 구제조치를 심사한 후 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8조, 제14조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 실효적 국내 구제조치 부재는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68. 제13조를 근거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법률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법률과 관련하여 다른 심사(일반적으로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만 규정한 제13조를 충족하는 심사)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는 실제로 법률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 검토에 해당한다(*Young, James and Webster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보고서, 1979, § 177). *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2002 (§ 113)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3조가 국내법의 상태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소가 체약국에 협약을 통합하기 위한 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85 참조).

법률에 관한 청구에서 재판소는 제13조 의무에 관련된 해석 문제를 심사할 필요가 없거나(*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1988, § 87) 제13조가 적용되지 않거나(*Gustafsson v. Sweden*, 1996, § 70)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Maurice v. France* [GC], 2005, § 107; *Tsonyo Tsonov v. Bulgaria*, 2009, § 48)고 판결해왔다.

69. 제13조는 헌법 조항에 관해서는 실효적 구제조치를 보장하지 않는다(*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위원회 보고서, 1995, pp. 32-33; *Paksas v. Lithuania* [GC], 2011, § 114).

3. 사법부의 행위

70. 사법부의 행위의 경우, 제13조는

- 다양한 수준의 관할권을 강제하지 않는다(*Müller v. Austria*, 위원회 결정, 1974).
- 항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일부 사건에서만 제7의정서 제2조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Pizzetti v. Italy*, 위원회 보고서, 1991, § 41). 또한 제2심 수준의 관할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Z. and E. v. Austria*, 위원회 결정, 1986; *Kopczynski v. Poland*, 위원회 결정, 1998; *Csepyová v. Slovakia* (dec.), 2002).
- 일반 법원에 대해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Altun v. Germany* 위원회 결정, 1983).

71. 최고 사법 기관의 판결이 추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본질적으로 제13조를 침해하거나 협약에 근거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구성하지 못한다(*Tregubenko v. Ukraine* (dec.), 2003; *Sitkov v. Russia* (dec.), 2004; *Yuriy Romanov v. Russia*, 2005, § 55). 최고 국가 법원 또는 당국이 문제 행위를 한 경우, 항소 구제조치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13조 적용이 묵시적으로 제한된다(*Crociani and Others v. Italy*, 위원회 결정, 1980, pp. 150 및 183, 헌법재판소 관련; *Verein Alternatives Lokalradio Bern and Verein Radio Dreyeckland Basel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986,

최고행정기구인 연방평의회 관련; *Times Newspapers Ltd and Andrew Neil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보고서, 1991, § 60, 상원 관련). *Wendenburg and Others v. Germany* (dec.), 2003 사건에서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을 공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구제조치 부재는 제13조에 근거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청구의 이 부분은 근거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되었다.

72. 결과적으로 협약 조항이 국가에 사법부 또는 국가 법률 서비스를 감독하는 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Pizzetti v. Italy*, 위원회 보고, 1991, § 41). 따라서 협약 위반 혐의가 사법 행위인 경우에는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6조제1항에 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 법원에 제소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 절차 내에서 협약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Kudła v. Poland* [GC], 2000, § 147). 따라서 제13조가 국내법에 제6조제1항으로 보호되는 재판청구권 부재에 대해 개인이 제소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ibid.*, § 151; *Yassar Hussain v. the United Kingdom*, 2006, § 26).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재판소는 청구인이 무죄추정권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해 형사법원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재하므로 제6조제2항에 비추어 협약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Konstas v. Greece*, 2011, §§ 56–57). 또한 본 해설서에서 제6조제2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4. 사인(私人)의 행위

73. 사인(私人)의 행위의 경우 국가가 이러한 행위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 낙태 반대 캠페인을 조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Plattform "Ärzte für das Leben" v. Austria*, 1988, §§ 34–39), 정신질환이 있는 감방 동료에게 살해당한 재소자에 대한 국가 책임(*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101) 등 국가가 개인이 조직한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조치 관련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II. 협약 제13조 및 협약과 그 의정서의 기타 실체적 조항

A.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⁴

협약 제2조 - 생명권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본 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의 보호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방지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HUDOC 주제어

적극적 의무(2) - 생명(2-1) - 효과적인 조사(2-1) - 힘의 행사(2-2)

생명권 침해 주장

a. 일반 원칙

74. 당국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성격은 제13조에 따른 구제조치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명권의 본질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13조 목적에 따른 실효적 구제조치의 개념은 국내 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조치를 침해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금 지급뿐 아니라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와 청구인이 조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한다(*Kaya v. Turkey*, 1998, § 107; *Yaşa v. Turkey*, 1998, § 114;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 149).

75.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기관이 위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협약 제2조에 따라 체약국에 부과된 절차적 조사 의무보다 제13조의 요건이 광범위하다고 판결했다(*Kiliç v. Turkey*, 2000, § 93; *Orhan v. Turkey*, 2002, § 384; *Gongadze v. Ukraine*, 2005, § 192; *Tagayeva and Others v. Russia*, 2017, § 619).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 상황에 대한 범죄 수사가 효과적이지 않고 기타 정부가 제안한 민사적 구제를 포함한 기타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훼손되었다면, 재판소는 국가가 협약 제13조에 근거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Isayeva v. Russia*, 2005, § 229).

76. 그러나 절차적 측면에서 수사 실효성 부족에 대한 제2조 위반 혐의 심사의 경우, 법적 문제를 이미 심사했고 제13조에 근거하여 별도로 청구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Makaratzis v. Greece* [GC], 2004, § 86; *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2007, § 363; *Karandja v. Bulgaria*, 2010, § 72; *Janowiec and Others v. Russia* (dec.), 2011, § 124; *Maskhadova and Others v. Russia*, 2013, § 193; *Tagayeva and Others v. Russia*, 2017, § 622).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95) 사건에서

⁴ 협약 제2조에 대한 해설서(생명권) 참조.

재판소는 생명권의 절차적 측면을 평가하고 사고사를 수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당국의 적극적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2조에 근거한 이 청구와 관련하여 협약 제13조에 근거한 청구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2.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

77. 국가가 개인의 실종 및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는 청구인이 조사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여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한다(*Kaya v. Turkey*, 1998, § 107-108; *Yaşa v. Turkey*, 1998, § 114; *Kiliç v. Turkey*, 2000, §§ 92-93; *Salman v. Turkey* [GC], 2000, § 109).

78. 그러나 유가족의 이익과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한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이 제2조에 근거한 국가의 절차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판례에 따라 반드시 제13조 위반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소는 4개 사건에서 기존 민사 소송이 경찰관의 총기 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Hugh Jordan v. the United Kingdom*, 2001, §§ 161-165; *McKerr v. the United Kingdom*, 2001, §§ 172-176; *Kell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1, §§ 155-159; *Shanaghan v. the United Kingdom*, 2001, §§ 136-140).

79. 따라서 국가가 제2조의 절차적 의무에 따라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제13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2조에 근거한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 대리인 또는 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고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실효적 구제조치에 대한 유가족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148;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91;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 149).

80.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위험한 활동에서 치명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조는 당국에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발적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 공무원 또는 당국이 사실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개인은 구제조치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149;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92).

81. 당국이 타인의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제13조로 인하여 당국이 항상 이러한 주장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협약에 근거한 권리 침해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국가 공무원 또는 기관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Keenan v. the United Kingdom*⁵, 2001, § 129;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97).

3. 보상

82.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경우 제13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반으로 발생한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구제조치의 일부로 제공되어야 한다 (*Keenan v. the United Kingdom*, 2001, § 130;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97; *Bubbins v. the United Kingdom*, 2005, § 171).

⁵ 제2조와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83. 재판소 스스로가 상당한 경우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고통, 스트레스, 불안 및 좌절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Keenan v. the United Kingdom*, 2001, § 130; *Kontrová v. Slovakia*, 2007, § 64; *Poghosyan and Baghdasaryan v. Armenia*, 2012, § 46).

84. 최종 보상금 적시 지급은 제13조에 근거하여 유가족의 고통에 보상하는 구제조치의 필수 요소이다(*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101).

85. 일반적으로 공공 당국에 대해 불법 또는 과실 혐의가 제기된 경우, 국내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Caraher v. the United Kingdom* (dec.), 2000; *Hugh Jordan v. the United Kingdom*, 2001, § 162;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99).

4. 정보 접근

86. 청구인들 전원이 테러 피해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부는 위반 혐의의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하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정보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Tagayeva and Others v. Russia*, 2017, § 627).

Tagayeva and Others v. Russia, 2017 (§§ 628–632) 사건에서 테러 공격에 대한 범죄 수사 외에 다양한 절차가 진행됐고, 의회에서도 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광범위하고 상세히 연구했다. 이러한 후속 보고서는 협약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절차적 의무와는 별도로, 사실 규명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의 한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a. 예시

87.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국가 대리인이 힘을 행사한 사건에서 실효적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서 보상금 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조치를 포함한 가용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 국가 국경수비대에 의해 또는 이들의 묵인 하에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자행된 살인(*Tanrikulu v. Turkey* [GC], 1999, §§ 118–119; *Kılıç v. Turkey*, 2000, §§ 92–93; *Mahmut Kaya v. Turkey*, 2000, §§ 125–126)
- 군인들의 민간인 살해(*Khashiyev and Akayeva v. Russia*⁶, 2005, §§ 184–186);
- 강제실종 후 사망(*Gongadze v. Ukraine*, 2005, §§ 192–194)
- 군의 민간 지역 공중 폭격으로 인한 가족 사망(*Abakarova v. Russia*, 2015, §§ 104–105)
- 경찰 구금 중 사망(*Salman v. Turkey* [GC]⁷, 2000, §§ 122–123);
- 군복무 중 징집병 사망(*Ataman v. Turkey*, 2006, §§ 77–79)

88.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인의 행위에 관해 제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 재소자의 자살(*Keenan v. the United Kingdom*⁸, 2001, §§ 124–128; 본 해설서의 90항 참조)

⁶ 제2조와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⁷ 제2조와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⁸ 제2조와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 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의 감방 동료 살해(*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98-101; 본 해설서의 90항 참조)
- 정신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HIV 양성 환자의 사망(*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 152-153).

89.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예방적 및/또는 보상적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재소자 사망(*Slimani v. France*⁹, 2004, §§ 39-42)
- 보안군의 총격에 의한 시위대 사망(*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2011, §§ 337-339)

90.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비금전적 손해에 보상하는 구제조치가 부재할 경우,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 재소자의 자살(*Keenan v. the United Kingdom*, 2001, §§ 129-131);
- 재소자의 감방 동료 살해(*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02, §§ 98-101);
- 빈민가 인근 쓰레기장 폭발 사고 및 신속한 행정 절차 부재로 인한 사망(*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150-155)
- 경찰의 명령에 불복하여 사살당한 남성(*Bubbins v. the United Kingdom*, 2005, § 172);
- 경찰이 적절히 보호하지 못해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아동(*Kontrová v. Slovakia*, 2007, §§ 63-65)
- 정신병원 자발 입소 후 자살(*Reynolds v. the United Kingdom*, 2012, §§ 61-69)

91. 재판소는 제3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개인이 사망한 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제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판결했다(*Zavoloka v. Latvia*, 2009, §§ 40-42).

B. 제3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협약 제3조 - 고문의 금지

“누구도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HUDOC 주제어

고문(3) - 비인도적 대우(3) - 비인도적 처벌(3) - 굴욕적인 대우(3) - 굴욕적인 처벌(3) - 효과적인 조사(3) - 추방(3) - 범죄인 인도(3) - 적극적 의무(3)

1. 고문 혐의

a. 일반 원칙

92. 협약 제3조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성격은 제13조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국가 대리인에 의해 고문당했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제기한 경우, “실효적 구제조치”의

⁹ 제2조 또는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없음

개념은 적절한 보상금 지급 이외에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와 청구인이 조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한다(*Aksoy v. Turkey*, 1996, § 98; *Aydin v. Turkey*, 1997, § 103).

93. 재판소가 조사의 실효성 부재를 이유로 절차상 제3조 위반이라고 판결한 경우, 법적 문제를 이미 심사했고 제13조에 근거한 별도의 쟁점이 없다는 견해를 취할 수 있다(*Jorgov v. Bulgaria*, 2004, § 90; *Gömi and Others v. Turkey*, 2006, § 83; *Šečić v. Croatia*, 2007, § 61; *Zelilof v. Greece*, 2007, § 64; *Rizvanov v. Azerbaijan*, 2012, § 66; *Jeronovičs v. Latvia* [GC], 2016, § 125; *Aleksandr Andreyev v. Russia*, 2016, § 71; *Olisov and Others v. Russia*, 2017, § 92).

94. 그러나 제13조의 요건은 제3조(제2조 및 제5조와 같이)에 따른 체약국의 의무보다 광범위하여 체약국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자의 실종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Khashiyev and Akayeva v. Russia*, 2005, § 183;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256; *Nasr and Ghali v. Italy*, 2016, § 332).

2.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

95. 고문 금지의 본질적 중요성과 고문 피해자의 매우 취약한 처지를 고려하여 제13조는 국내 제도에 따른 다른 구제조치를 침해하지 않고, 국가에 고문 사건을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여한다(*Aksoy v. Turkey*, 1996, § 98; *Aydin v. Turkey*, 1997, § 103).

96. 1984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12조에는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협약에는 이러한 의무가 명시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재판소는 제13조의 “실효적 구제조치” 개념에 이러한 요건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Aksoy v. Turkey*, 1996, § 98; 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서는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1989, § 88 참조).

97. 당국이 사인(私人)의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경우 제13조가 당국에 항상 혐의를 조사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협약에 근거한 권리 침해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국가 공무원 또는 기관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9; *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2, § 110; *O’Keeffe v. Ireland* [GC], 2014, § 115).

3. 보상

98.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와 같은 기본권이 쟁점이 된 경우 제13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위반으로 인해 비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을 구제조치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9; *McGlinch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3, § 63)

99. 재판소는 종종 스스로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고통, 스트레스, 불안 및 좌절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부여한다(*McGlinch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3, § 66).

a. 예시

100.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국가 대리인이 무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실효적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서 보상금 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조치를 포함한 가용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 경찰 구금 또는 수감(*Aksoy v. Turkey*, 1996, §§ 99–100; *Aydin v. Turkey*, 1997, §§ 104–109; *Assenov and Others v. Bulgaria*, 1998, § 118; *Büyükdag v. Turkey*, 2000, §§ 65–69; *Bati and Others v. Turkey*, 2004, §§ 145–149; *Chitayev v. Russia*, 2007, §§ 202–203);
- 보안군의 마을 공격(*İlhan v. Turkey* [GC], 2000, §§ 98–103);
- CIA 요원에게 피구금자 특별 인도(*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¹⁰, 2012, §§ 258–262; *Nasr and Ghali v. Italy*¹¹, 2016, §§ 334–337; 또한 본 해설서의 141항 참조).

101.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사인(私人)의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심사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경우,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 부모로부터 학대 및 방임을 당한 아동(*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9–111; 본 해설서의 103항 참조)
- 양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D.P. and J.C. v. the United Kingdom*¹², 2002, §§ 136–138)
- 공립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학생(*O’Keeffe v. Ireland* [GC], 2014, §§ 184–187)
- 금단증상에 시달리는 마약중독 재소자(*McGlinch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3, §§ 64–67; 본 해설서의 103항 참조).

102. *Hüseyin Esen v. Turkey*, 2006, (§§ 56–64) 사건에서 재판소는 경찰 구금 중인 남성을 고문한 혐의로 경찰관이 유죄를 받았으나 시효가 지나 유죄 판결이 무효화되어 형사 절차가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03.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비금전적 손해에 보상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재할 경우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 부모로부터 학대 및 방임을 당한 아동(*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10–111)
- 양부로부터 성적 및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2, §§ 111–116)
- 금단증상에 시달리는 마약중독 재소자(*McGlinch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3, §§ 64–67)
- 과도한 육체 활동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군인(*Chember v. Russia*, 2008, §§ 71–73)
-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요양시설의 열악한 생활 환경(*Stanev v. Bulgaria* [GC], 2012, §§ 219–221)

¹⁰ 제3조, 제5조 및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¹¹ 첫 번째 청구인의 경우 제3조, 제5조 및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및 두 번째 청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¹² 제3조 또는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 자백을 받기 위해 용의자를 학대한 경찰관(*Poghosyan and Baghdasaryan v. Armenia*, 2012, §§ 44-48)

104. *Association Innocence en Danger and Association Enfance et Partage v. France*, 2020, §§ 188-19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연합이 프랑스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제도가 오작동 하였다는 사유)는 것만으로는 전반적으로 구제조치가 제13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프랑스 판례법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제소 조건이 점차 완화되어왔다. 따라서 국가의 “중과실” 책임은 사법 제도의 기능을 훼손하는 일련의 경미한 과실 행위를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수사 및 경찰 활동을 포함한 재판권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법 제도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프랑스 입법부가 국가의 민사 책임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채택할 때는 법적 및 실질적 측면 모두에서 실효적 구제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105. *Loste v. France, 2022* (§§ 67-78)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위탁 가정에 배치되어 생활하는 동안 공인 보육사의 남편에게 12년간 학대를 받은 것과 청구인과 그 가족의 이슬람교 신앙을 존중하기 위해 종교적 중립 조항의 형태로 제공된 약속을 가족이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협약 제3조 및 제9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행정법원이 4년의 소멸 시효 원칙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송을 각하하며 지나친 형식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 법원은 법에 규정된 대로 청구인이 행정당국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날짜에 대해 청구인에게 질문 하지 않았다.

4. 구금 환경

a. 일반 원칙

106. 제3조에 근거한 재소자의 기본권의 경우 예방적 및 보상적 구제조치가 실효적으로 간주되려면 보충성을 갖춰야 한다(*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98; *Torreggiani and Others v. Italy*, 2013, § 50; *Volodya Avetisyan v. Armenia*, 2022, § 29).

107. 학대 소송에서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 질문은 제3조에 보장된 권리를 단순히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청구인이 국내 법원에 이 청구를 제기하여 시의적절한 직접 구제를 받을 수 있는냐는 것이다(*Mandić and Jović v. Slovenia*, 2011, § 107). 따라서 보상적 구제조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계속되는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재소자의 물리적 구금 환경을 개선하지 못해 “예방적” 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제3조의 구금 또는 감금 조건 위반 혐의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로 간주할 수 없다(*Cenbauer v. Croatia* (dec.), 2004; *Norbert Sikorski v. Poland*, 2009, § 116; *Mandić and Jović v. Slovenia*, 2011, § 116).

108. 향후 보상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은 제3조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합법화하고 국가 구금 기준을 협약 요건에 맞춰야 하는 국가의 법적 의무를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98; *Varga and Others v. Hungary*, 2015, § 49).

109. *Ulemek v. Croatia*, 2019 사건은 제3조를 위반한 구금 환경에 대한 예방적 구제조치와 보상적 구제조치의 관계를 설명한다.

110. 재소자는 처벌을 받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스스로를 위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91).

5. 예방적 구제조치

111. 청구인이 제3조에 위배되는 환경에서 구금된 경우, 가능한 최선의 구제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다. 예방적 구제조치는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 독립 당국 또는 법원이 재소자의 청원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214 및 219). 당국 또는 법원은 협약에 대한 청원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83).

예를 들어, 행정당국 앞에서 구금 조건에 관한 예방적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당국이 (a) 수감제도를 관할하는 당국에서 독립되어 있고, (b) 재소자의 효과적인 불만 심사 참여를 보장하고, (c) 재소자의 청구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d) 이러한 청구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을 재량껏 사용하고, (e) 구속력과 집행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82-183 및 282-283). 이러한 구제조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구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Torreggiani and Others v. Italy*, 2013, § 97).

결과적으로 구제조치를 사용하는 자에게 국가의 감독 권한 행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검사에 대한 청구와, 집행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옴부즈맨에 대한 청구는 실효적 구제조치로 간주될 수 없다(*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102-106). 반면 형집행 판사 또는 행정법원에 대한 청구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될 수 있다(*Stella and Others v. Italy* (dec.), 2014, §§ 46-55; *Atanasov and Apostolov v. Bulgaria* (dec.), 2017). 교정당국이 먼저 청원을 심사하고 이후 형량 집행 판사가 사법 심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은 실효적 구제조치가 될 수 있다(*Domján v. Hungary* (dec.), 2017, §§ 21-23).

사건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잃고 만족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소자가 사법 당국에 제출한 청구에 대해 서신으로만 회신하고 관련 국내법에서 규정한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실효적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없다(*Lonić v. Croatia*, 2014, §§ 57-63). 일반적으로 교도소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검찰에 대한 청구의 경우 해당 검찰이 보안 등급으로 인해 재소자의 구금 환경에 대한 문서를 심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구제조치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없다(*Csüllög v. Hungary*, 2011, §§ 48-49).

112. 예방적 구제조치의 맥락에서 구제조치는 근본적인 문제의 성격에 따라 관련 재소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교정 시설의 부적절한 환경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심각한 재소자 권리 침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로 구성될 수 있다(*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219; *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89).

6. 보상적 구제조치

113.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는 환경에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Benediktov v. Russia*, 2007, § 29; *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97-98 및 221-231).

114. 재판 중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조건 등에 구금된 개인은 구제조치를 통해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결과 비교하여 부당하지 않은 수준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221-231; *Yarashonen v. Turkey*, 2014, § 61).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의 보상금 청구가 일부만 인정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에스토니아 국내법에 따라 제공되는 보상적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Nikitin and Others v. Estonia*, 2019, § 216).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 당국에 보상금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상금은 재판소가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가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국내 법체계와 전통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Shmelev v. Russia* (dec.), 2020, §§ 91-94).

115. 제3조에 반하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에 수감 중이거나 수감되었던 재소자는 보상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청구인에게 과도한 증명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재소자는 명백한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증인의 진술 또는 교도소 당국이나 감독 기관에 대한 불만과 답변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혐의를 반박하는 것은 당국의 몫이다(*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84). 열악한 구금 환경은 피해자에게 비금전적 피해를 준다는 강한 추정이 가능하다(*Iovchev v. Bulgaria*, 2006, § 146; *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90). 구제조치의 운영을 관장하는 국내 규칙과 관행은 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이나 기관의 잘못과 이들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능력 또는 (*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229) 외부 증거를 통해 정신적 고통의 형태로 비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90) 능력에 따라 보상 조건부 보상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추정의 존재를 반영해야 한다.

116. 구제조치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환경에서 재판 중인 재소자에게 감형을 포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감형이 그러한 이유로 명시적으로 시행되고 형기에 미친 영향을 측정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Stella and Others v. Italy* (dec.), 2014, §§ 59-63; *Varga and Others v. Hungary*, 2015, § 109).

a. 예시

117.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구금 환경(*Assenov and Others v. Bulgaria*, 1998, §§ 114-118, 경찰 구금 중; *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100-119; *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92-213; *Varga and Others v. Hungary*, 2015, §§ 51-65; *G.B. and Others v. Turkey*, 2019, §§ 125-137, 이민자 어머니 및 미성년 자녀; *Barbotin v. France*, 2020, §§ 50-59; *J.M.B. and Others v. France*, 2020, § 212-221; *Sukachov v. Ukraine*, 2020, §§ 118-125; *Dikaiou and Others v. Greece*, 2020, §§ 65-73, HIV 양성 재소자; *Volodya Avetisyan v. Armenia*, 2022, §§ 29-34)
- 유죄 판결을 받은 테러범의 독방 감금 기간 8년 연장 조치(*Ramirez Sanchez v. France* [GC], 2006, §§ 162-166)
- 고위험 재소자의 반복적인 교도소 이송 및 빈번한 몸수색(*Khider v. France*, 2009, §§ 141-145)
- 반복 이송 및 특별 구금 조치(*Bamouhammad v. Belgium*, 2015, §§ 168-173);
- 재소자 이송(*Tomov and Others v. Russia*, 2019, §§ 143-156);
- 45일 동안 징벌방에서 교도소 징벌 처분 집행(*Payet v. France*, 2011, §§ 131-134);
- 교도관 파업 중 재소자에게 필수품을 제공하는 명령이 비효율적이 된 구조적 문제(*Clasens v. Belgium*, 2019, §§ 44-47)
- 교도소 방문과 관련하여 재소자에 대한 반복적 및 무작위적 알몸수색(*Roth v. Germany*, 2020, §§ 94-98).

118.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6 (§§ 213–218)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국가의 분리주의 지역에 수감된 재소자가 협약 권리 위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참작하여 몰도바 공화국 측에서 제3조, 제8조,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19. *Ulemek v. Croatia*, 2019 (§§ 93–1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서 열악한 구금 환경 혐의와 관련하여 크로아티아의 예방적 및 보상적 구제조치의 일반적인 비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와 관련하여 청구에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20. *Shmelev v. Russia* (dec.), 2020 (§§ 121–142)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재판 전후에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금 환경에 수감된 재소자를 위해 새로 도입된 보상적 구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121. *Polgar v. Romania*, 2021 (§§ 75–99)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미 종료된 열악한 구금 환경 또는 이송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13일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이 유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이 협약 위반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최종 국내 판결은 2019년 2월 13일에 내려졌는데, 이는 재판소가 해당 구제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시작일로 삼은 날짜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7. 망명, 추방 및 범죄인 인도

a. 일반 원칙

122. 협약 제6조는 광범위한 절차적 권리 범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망명 및 추방/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내 절차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반면 제13조는 이들 분야의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

123. 망명과 이민 사건에 적용할 경우, 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자체 범위를 제한하며(*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286–287; *I.M. v. France*, 2012, § 136), 주요 관심사는 직간접적으로 피난국으로의 임의 강제소환으로부터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T.I. v. the United Kingdom* (dec.), 2000; *Muslim v. Turkey*, 2005, §§ 72–76).

124. 개인이 다른 국가로 추방될 경우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서 금지하는 취급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청구를 제기하면 “국가당국”은 반드시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심사해야 한다(*Jabari v. Turkey*, 2000, § 39; *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2005, § 448; *Gebremedhin [Gaberamadhien] v. France*, 2007, § 58;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198;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2012, § 82).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 받은 국가가 제13조를 준수하려면 관할 기관이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387).

125. 청구서 제출 기간(예: 신속 망명 절차에) 및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실제로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고 따라서 협약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의 요건에 위배될 수 있다(*I.M. v. France*, 2012, §§ 136–160; *R.D. v. France*, 2016, §§ 55–64). 그러나 기한이 짧아도 망명 신청자가 제소 목적상 보호조치에 대해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실효적이 될 수 있다(*E.H. v. France*, 2021, §§ 174–207).

126. 실효적 구제조치의 개념은 학대의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조에 반하는 처우를 받을 위험을 두려워할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사는 청구인이 추방당한 이유 또는 추방 국가의 국가 안보에 대한 인지된 위협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Chahal v. the United Kingdom*, 1996, § 151).

127. 또한 추방 사건에서 실효적 구제조치는 자동 집행정지효가 있어야 한다(*A.M. v. the Netherlands*, 2016, § 66). 단순히 “이론적” 집행정지 효과만 가진 구제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128. 그러나 조사나 목적국 선정 심사 또는 이에 관한 위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실제 추방 계획의 경우 집행정지 기능이 있는 구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Moustahi v. France*, 2020, §§ 152-155). 이러한 계획은 불과 시행 몇 시간 전에 당국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본래 제3조 위반 요건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후속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는 이 조항을 준수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129. 관련인은 적절한 구제조치를 이용하고 청구를 입증할 수 있고 통역 서비스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Abdolkhani and Karimnia v. Turkey*, 2009, §§ 114-115; *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301-304 및 319;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204).

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294-321)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음 문제점을 지적했다. (i) 당국과 망명 신청자 간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이 없는 경우 따라야 할 망명 절차 및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자”에 대한 통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ii) 경찰청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3일에 불과한 경찰 신고 기한, (iii) 통역사 부족 및 개별 면담 담당자 교육 부족, (iv) 법적 지원 부족으로 망명 신청자의 법적 자문 기회 박탈, (v) 과도한 결정 기간 지연, (vi) 절차 지연으로 망명 신청 본안 심사에 대한 보장 부족을 상쇄하지 못하는 최고행정법원 청구, (vii) 사건 본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자가 실제로 강제송환 당할 위험. 재판소는 그리스 당국의 망명 신청 심사 부족, 망명 신청 심사 및 실효적 구제조치 없이 본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송환될 위험 등을 이유로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30. 추방의 경우 협약 위반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재판소는 추방당할 위험이 사라져서 제2조 또는 제3조 위반 혐의에 근거한 피해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거나 제13조에 근거한 피해자의 지위를 박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Gebremedhin [Gaberamadhien] v. France*, 2007, § 56; *I.M. v. France*, 2012, § 100; *M.A. v. Cyprus*, 2013, § 118; *Mir Isfahani v. the Netherlands* (dec.), 2008 대조). 또한, 청구인들이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또는 다른 곳으로 강제 추방될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판소가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한 청구를 인적 관할권(ratione personae)과 양립할 수 없어 각하했다고 하여 제13조의 적용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다(*Sakkal and Fares v. Turkey* (dec.), 2016, § 63).

b. 예시

131. 재판소는 다음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 및 집행정지조치가 부재한 경우 제3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 학대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청구인들을 추방 또는 인도
 - 아프가니스탄(*M. and Others v. Bulgaria*¹³, 2011, §§ 127-133; 본 해설서에서 제8조에 근거한 청구에 관한 231 항 참조)

¹³ 제3조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 그리스에서 아프가니스탄(*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 294-321)
- 카메룬(*Yoh-Ekale Mwanje v. Belgium*, 2011, §§ 106-107, HIV 감염 말기인 청구인이 추방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 에리트레아(*Gebremedhin [Gaberamadhien] v. France*, 2007, §§ 58-67, 망명을 신청한 청구인이 프랑스 입국이 거부된 후 공항 환송 구역에 배치된 경우)
- 러시아 연방(체첸), 벨로루시 경유(*M.K. and Others v. Poland*, 2020, §§ 219-220, 국경수비대가 제3국인 벨로루시로의 약식 송환을 포함한 망명 신청 등록을 거부하여 본국인 러시아연방(체첸)으로 간접적으로 강제송환 당하고 학대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 벨기에에서 그리스(*M.S.S. v. Belgium and Greece* [GC], §§ 385-396);
- 인도(*Chahal v. the United Kingdom*, 1996, §§ 153-155, 정치활동으로 기소된 시크교도 분리주의자)
- 이란(*Jabari v. Turkey*, 2000, §§ 49-50, 청구인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
- 이란 또는 이라크(*Abdolkhani and Karimnia v. Turkey*, 2009, §§ 113-117);
- 모로코(*A.C. and Others v. Spain*¹⁴, 2014, §§ 90-105, 국제 보호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라위족 출신 개인)
- 수단(*I.M. v. France*, 2012, §§ 136-160) 및 시리아(*M.A. v. Cyprus*¹⁵, 2013, §§ 134-143), 규칙 39를 적용해야만 청구인들의 추방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경우)
- 시리아(*S.K. v. Russia*, 2013, §§ 78-99; *Akkad v. Turkey*, 2022, §§ 82-92, 튀르키예 법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있지만 청구인이 추방되기 전 당국의 성급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구제조치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투르크메니스탄(*Allanazarova v. Russia*, 2017, §§ 100-115)
- 러시아로 범죄인 인도될 체첸 출신 청구인들에게 이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2005, §§ 449-466);
- 공해상에서 체포되어 본국인 리바이로 추방 결정된 소말리아 및 에리트리아 국적 이민자가 추방 조치 집행 전 이들의 신청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평가받기 위한 청구(*Hirsi Jamaa 및 기타 v. 이탈리아* [GC]¹⁶, 2012, §§ 201-207)
- 진정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입국 불허 결정을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Singh and Others v. Belgium*, 2012, §§ 86-105)
- 청구인의 개인 상황에 대한 그리스 당국의 장래효(ex nunc) 평가 없이 튀르키예로 즉시 송환될 위험(*B.A.C. v. Greece*, 2016, §§ 66-67)
- 튀르키예 기자가 국경에서 체포된 지 24시간 후에 튀르키예로 즉시 송환되어 사용 가능한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잃고 따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D v. Bulgaria*, 2021, §§ 131-135)

132. 재판소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를 참작할 때 제3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 추방 또는 범죄인 인도 시 위험에 근거한 청구:

¹⁴ 제2조 및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¹⁵ 제2조 및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¹⁶ 협약 제3조 및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 위반

- 알제리(*Bensaid v. the United Kingdom*, 2001, §§ 56-58);
- 미국(*Soering v. the United Kingdom*, 1989, §§ 121-124);
- 이란(*G.H.H. and Others v. Turkey*, 2000, §§ 37-40);
- 모로코(*E.H. v. France*, 2021, §§ 174-207);
- 소말리아(*Salah Sheek v. the Netherlands*, 2007, § 154);
- 스리랑카(*Vilvarajah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1, §§ 121-127);
- 국가가 제13조에 근거하여 망명 사건에서 집행정지 효과를 가진 제2심 수준의 관할권을 형성할 의무가 없는 경우(*A.M. v. the Netherlands*, 2016, §§ 67-71); 망명 절차 집행정지 효과로 제13조 요건을 충족했다.

133. *Sakkal and Fares v. Turkey* (dec.), 2016 (§ 64)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리아로의 추방 결정에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3조에 비추어 청구에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C. 제4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¹⁷

협약 제4조 - 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본 조의 적용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본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 (b) 국방의 의무를 위한 군복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의무
- (c)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 또는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
- (d)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부과되는 작업 또는 의무”

HUDOC 주제어

효과적인 조사(4) - 적극적 의무(4) - 노예(4-1) - 예속상태(4-1) - 인신매매(4-1) - 강제적 노동(4-2) - 의무적 노동(4-2) - 피구금자에게 요구되는 작업(4-3-a) - 조건부 석방 중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작업(4-3-a) - 군복무(4-3-b) - 민간대체복무(4-3-b) - 긴급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4-3-c) -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4-3-c) -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4-3-d)

134. 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적극적 절차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한 청구에 제13조 청구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의무는 제13조에 근거한 일반 의무와 관련하여 특별조항(*lex specialis*)을 구성한다.

135. *C.N. and v. France*, 2012 (§§ 113-114)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청구의 본안을 심사한 후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제13조 위반 혐의에 대한 청구를

¹⁷ [협약 제4조에 대한 해설서](#)(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참조.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C.N. v. the United Kingdom*, 2012, §§ 85-86 참조).

D. 제5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¹⁸

1. 제5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협약 제5조제1항 -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HUDOC 주제어

신체의 자유(5-1) - 신체의 안전(5-1) - 자유의 박탈(5-1) - 법이 정한 절차(5-1) -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5-1)

136. 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에서 제5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37. 그러나 재판소가 절차적 측면에서 제5조 위반으로 판결한 경우, 제5조 청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Bazorkina v. Russia*, 2006, § 165; *Imakayeva v. Russia*, 2006, § 197). 재판소는 제5조에 구금의 합법성과 관련된 몇 가지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138. 그러나 제13조 요건은 제5조에 근거한 체약국의 의무보다 광범위하여 체약국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자의 실종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Kurt v. Turkey*, 1998, § 140;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252). 친척이 당국에 의해 실종됐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가 제기된 경우 제13조의 목적상 “실효적 구제조치” 개념은 적절한 보상금 지급 이외에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와 청구인이 조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한다(*Kurt v. Turkey*, 1998, § 140).

139. *Kurt v. Turkey*, 1998 (§§ 140-142) 사건에서 국경수비대가 아들을 마을에 구금했고, 당국의 책임 하에 있는 상황에서 실종되었다는 청구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당국은 가족을 위해 실종 사건을 효과적이고 철저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위반 판결을 이끌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5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40. 해외에서 군인이 실종된 *Syrkin v. Russia* (dec.), 1999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실시한 실종 조사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5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에 근거하여 청구에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해외 수색의 한계로 인해 당국은 국제 지원을 요청했다. 당국은 청구인 아들의 소재 파악 가능성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했고, 청구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한 공식 조사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여러 차례 중단되었지만, 재판소는 일반적 관점에서 당국이 실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¹⁸ [협약 제5조에 대한 해설서](#)(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참조.

다수가 실종된 체첸인 사건에서 재판소는 구금에 대한 제5조제1항 규정 위반을 감안할 때 제5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에 따른 별도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Imakayeva v. Russia*, 2006, § 197; *Luluyev and Others v. Russia*, 2006, § 197; *Chitayev v. Russia*, 2007, § 204; *Baysayeva v. Russia*, 2007, § 159).

141.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259–262) 및 *Nasr and Ghali v. Italy*, 2016 (§§ 334–337) 사건에서 재판소는 CIA 요원에게 용의자를 인도하는 중 청구인들에게 가해진 고문과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사를 감안하여 협약 제3조, 제5조, 제8조에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 위반에 관한 청구에서 청구인들에게 실효적 구제조치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사건에서 청구인은 책임자의 신원 확인 및 처벌,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했다. 특히 검찰이 피상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제3조와 제5조에 근거한 청구인의 청구에 관해 효과적인 범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청구는 한 번도 진지한 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청구인이 청구 제기를 한 해당 행위를 당한 적이 없다는 급조된 해명만을 내세워 무시되었다. 또한 청구인을 CIA에 인도하기로 한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그 이전의 구제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는 충분히 보장하는 다른 기관에 의해 부당한 대우의 위험 또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Nasr and Ghali v. Italy, 2016 사건에서는 국가 당국의 조사가 정부의 기밀 보호 대상이 되면서 실효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증거가 국가 기밀 대상이 되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요원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지 못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2.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협약 제5조제4항 및 제5항 - 구금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본 조의 규정에 반하는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HUDOC 주제어

구금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 (5-4) - 절차 개시 (5-4) - 법원의 심사 (5-4) - 지체 없이 심사 (5-4) - 심사에 대한 절차적 보장 (5-4) - 석방 명령 (5-4)

보상 (5-5)

142. 구금의 합법성 심사에서 재판소가 확립한 판례법에 따라 협약 제5조제4항과 제5항은 제13조의 일반 요건에 대한 특별조항(*lex specialis*)을 구성하고 제13조의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 제13조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청구의 기반이 되는 사실이 제5조제4항 및/또는 제5항에 근거한 심사 결과와 동일한 경우, 제5조제4항 및/또는 제5항 위반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제13조 위반 혐의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De Jong, Baljet and Van Den Brink v. the Netherlands*, 1984, § 60; *Chahal v. the United Kingdom*, 1996, § 126;

Mubilanzila Mayeka and Kaniki Mitunga v. Belgium, 2006, §§ 110-111; *A.B. and Others v. France*, 2016, § 158; 본 해설서의 63항 참조).

143. *Gusinskiy v. Russia* (dec.), 2003 사건에서 재판소에 청구서가 제출된 후 상급 법원의 구금 합법성을 심사한 결과 피해자 지위가 없어 청구가 각하됐다. 감독심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석방 후 구금 합법성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청구가 승인된 후에는 재심리를 열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사건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다. 따라서 당국은 협약 제13조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보상했다.

E. 제6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¹⁹

1.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협약 제6조 -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추의 결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HUDOC 주제어

합리적인 기간(6-1)

a. 일반원칙

144. 협약 제6조제1항은 제13조에 대한 특별조항(*lex specialis*)이다. 많은 사건에서 재판소가 제6조제1항 위반으로 판결한 경우, 제13조에 근거한 청구를 별도로 판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이 주장하는 협약 권리가 재산권처럼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민사적 권리”인 경우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88; *Kudła v. Poland* [GC], 2000, § 146). 따라서 제6조제1항은 사법 절차의 모든 측면을 내포하여 제13조보다 엄격한 보호장치를 구성하고 제13조의 보호장치를 모두 포함한다(*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88;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3, § 110; *Campbell and Fell v. the United Kingdom*, 1984, § 123; *Brualla Gómez de la Torre v. Spain*, 1997, § 41).

재판소는 청구가 “형사 영역”의 제6조제1항과 제13조 모두의 범위에서 기존 항소 또는 파기 절차의 타당성과 직결된 경우 유사한 논리를 적용했다(*Kamasinski v. Austria*, 1989, § 110; *Kadubec v. Slovakia*, 1998, § 64).

145. 일반적으로 사법 절차에서 협약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Pizzetti v. Italy*, 위원회 보고서, 1991, §§ 20-21; *Menesheva v. Russia*, 2006, § 105; *Ferre Gisbert v. Spain*, 2009, § 39).

2.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 침해

146. 그러나 개인이 “국가당국”에 제기하고자 하는 협약 위반 혐의가 제6조제1항에 반하여 합리적 기한 내에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

¹⁹ 협약 제6조에 대한 해설서(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민사영역](#) 및 [형사영역](#) 참조.

흡수되지 않는다. 시민권과 의무에 대한 결정 또는 형사 소송에서 청구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법적 쟁점이다(*Kudła v. Poland* [GC], 2000, § 147).

147. 재판소는 청구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지 못해 제6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지만, 제13조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리를 받지 못했다는 청구를 별도로 심사할 것이다(*Kudła v. Poland* [GC], 2000, § 149).

148. 개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 기관에 협약 청구를 먼저 제출할 기회가 없는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13조의 요건은 법적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당 조항에 따라 부여된 일반 의무에 흡수된다기 보다는 제6조제1항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Kudła v. Poland* [GC], 2000, § 152).

149. 따라서 제13조의 올바른 해석은 동 조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제6조제1항의 요건 위반 혐의에 대해 국가 당국에서의 실효적 구제조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Kudła v. Poland* [GC], 2000, § 156).

150. 제6조제1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으면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Kontini-Arvantini v. Greece*, 2003, §§ 29-30; *Nastou v. Greece (no. 2)*, 2005, §§ 46-47).

3. 예방적 구제조치 및 보상적 구제조치

151. *Kudła v. Poland* [GC], 2000 (§ 159) 사건 판결과 *Mifsud v. France* (dec.) [GC], 2002 (§ 17) 사건 판결 모두에서 제13조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했다. 하나는 법원의 신속한 사건 판결을 촉진하는 구제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가 이미 지연된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구제조치이다(*Sürmeli v. Germany* [GC], 2006, § 99).

152. 따라서 국가는 제13조를 바탕으로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마련된 “예방적 또는 촉진적” 구제조치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든지 종료되었든 이미 지연된 경우 사후(ex post facto) 보상하는 “배상, 보상 또는 금전적 구제조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53. 예방적 구제조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가 이미 과도하게 지연됐고 이용할 수 있는 예방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경우에는 보상적 구제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Kudła v. Poland* [GC], 2000, § 158;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87). 그러한 구제의 적절성과 충분성의 경우, 보상 신청 자체가 과도하게 지연된 사법 절차에 실효적이고,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구제조치일 경우에만 이러한 결론이 적용된다(*Mifsud v. France* (dec.) [GC], 2002, § 17).

154.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는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신속한 절차를 촉진하는 구제조치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제조치 등 두 가지 종류의 구제조치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Cocchiarella v. Italy* [GC], 2006, § 77;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86). 이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판소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소가 결정한 수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ibid.*, § 213). 따라서 *Rutkowski and Others v. Poland*, 2015 (§§ 176 및 181-186) 사건에서 첫 번째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국내 구제조치 부재 시 재판소가 지급하는 수준의 5.5%에 불과하여 절차 지연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했다.

155. 예방적 및 보상적 구제조치는 이론상은 물론 실제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실효성을 갖는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104; *Panju v. Belgium*, 2014, §§ 62-63).

156. *Bara and Kola v. Albania*, 2021 (§§ 103-124) 사건에서 재판소는 *Luli and Others v. Albania*, 2014 사건에 대한 재판소 판결에 따라 민사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촉진적/예방적 및 보상적 구제조치가 이론상으로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157.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장기간 이어지고, 진행 중인 절차 지연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불편과 장기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 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국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Verrascina and Others v. Italy*, 2022, § 26).

α. 예방적 구제조치

158. 예방적 구제조치의 경우 재판소는 많은 영역에서 예방이 절대적으로 최적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Sürmeli v. Germany* [GC], 2006, § 100; *Wasserman v. Russia (no. 2)*, 2008, § 47; *Burdov v. Russia (no. 2)*, 2009, § 98; *Olivieri and Others v. Italy*, 2016, § 45).

159. 제6조제1항의 합리적인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사법 체계가 미흡할 경우, 절차 진행을 촉진하여 과도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구제조치는 보상적 구제조치와 달리 단순히 사후(*posteriori*) 위반 사항 정정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절차에서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현상을 방지하므로 보상금만 지급하는 구제조치보다는 확실히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Giuseppina and Orestina Procaccini v. Italy* [GC], 2006, § 72;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83; *Hiernaux v. Belgium*, 2017, § 50).

160. 마찬가지로, 사법 결정 미집행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위반 방지 수단을 마련하여 적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98).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개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이러한 수단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Metaxas v. Greece*, 2004, § 19). 이들 판결을 준수할 책임은 주로 국가 당국에 있으므로 국내 법체계에서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하여 집행을 촉진하여 협약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Akashev v. Russia*, 2008, §§ 21–22).

161. 형사 사건에서 재판소는 감형 승인 시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절차 기간을 적절히 참작했다고 판결했다(*Beck v. Norway*, 2001, § 27; *Cocchiarella v. Italy* [GC], 2006, § 77).

β. 보상적 구제조치

162. 보상적 구제조치의 경우 해당 구제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보상적 구제조치만 도입할 수 있다(*Mifsud v. France (dec.)* [GC], 2002;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87; *Burdov v. Russia (no. 2)*, 2009, § 99). *Hiernaux v. Belgium*, 2017 (§§ 59–62) 사건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적 구제조치 부재 시 재판소는 사법 조사 중 또는 수감 시 형사 절차 지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적 구제조치가 있으므로 제6장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63. 국가가 보상적 구제조치를 도입하여 중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재판소는 국내 법체계 및 전통에 부합하고 관련국의 생활 수준에 맞춰 구제조치를 조직할 수 있도록 국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Cocchiarella v. Italy* [GC], 2006, § 80). 보상 수준은 국내 구제조치의 특징과 실효성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소는 신속히 절차를 처리하고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구제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재판소가 판결한 금액보다 적지만 불합리하지 않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ibid.*, §§ 95–97).

그럼에도 재판소는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재판소의 판례법에 비추어 해석된 대로 협약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었는지 검증해야 한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99).

164. 이를 위해 재판소는 과도한 사법 절차 지연에 대한 보상적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주요 기준을 설정했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99; *Valada Matos das Neves v. Portugal*, 2015, § 73; *Wasserman v. Russia (no. 2)*, 2008, §§ 49-51).

-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94).
- 원칙적으로 보상 결정이 집행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즉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98).
- 보상 조치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은 제6조에서 보장하는 공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00).
- 소송 비용 관련 규칙은 정당한 소송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01).
- 보상금은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소가 지급한 보상금 수준과 비교하여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02-206 and 213).

165. 국내 수준에서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재판소가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한 보상금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 기간 구제조치를 무효화할 수 없다(*Rišková v. Slovakia*, 2006, § 100; *Kaić and Others v. Croatia*, 2008, §§ 39 and 42). 구제조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i) 청구인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었고 충분한 보상금을 받지 못해 해당 사건에서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ibid.*, §§ 43-44) 및 (ii) 신속하게 구제 받지 못하고 손해배상이 불충분한 경우(*Wasserman v. Russia (no. 2)*, 2008, §§ 54-58)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66. 국내 법원 판결이 협약 제41조에 대한 재판소 판례법에 부합하는 한, “핀토법(Pinto Act)”에 기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제조치는 실효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Cataldo v. Italy* (dec.), 2004). 재판소는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의 이 부분을 각하했다.

167. *Delle Cave and Corrado v. Italy*, 2007 (§§ 45-46) 사건에서도 과도한 절차 지연에 대한 국가 법원의 보상금 판결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보상금이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핀토”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핀토법”은 보상 금액 결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법원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168. 따라서 *Simaldone v. Italy*, 2009 (§§ 82-84) 사건에서 재판소는 “핀토” 보상금 지급이 12개월 지연됐지만, 이들 조항 위반 구성이 “핀토”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면서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및 제1의정서 제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핀토법”에 근거한 관할권을 가진 국가항소법원은 2005~2007년 약 16,000건을 판결했다. 이 중 “핀토”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500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일단은 핀토법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조치가 체계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었다.

169. 국내 법원은 금전적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 규모를 더욱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170. 그러나 비금전적 손해는 그렇지 않다.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면 비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강력하지만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 존재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03-204; *Wasserman v. Russia (no. 2)*, 2008, § 50).

이러한 추정은 국가가 채무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미 사법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했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좌절감을 고려할 때, 국가가 판결 집행을 과도하게 지연할 경우, 특히 힘을 얻는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100).

포르투갈 최고행정법원은 판례법을 통해 재판소 판례법에 드러난 이러한 해석과 원칙을 인정했지만,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 부재 시 청구인들의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므로 *Martins Castro and Alves Correia de Castro v. Portugal*, 2008 (§§ 52-57)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해석과 원칙이 포르투갈 법체계에 아직 충분히 통합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171. 그러나 절차 지연으로 최소한의 비금전적 손해만 발생하거나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Wasserman v. Russia (no. 2)*, 2008, § 50; *Martins Castro and Alves Correia de Castro v. Portugal*, 2008, § 54). 이러한 경우 국내 법원은 판결 사유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03-204).

b. 예시

4. 형사 소송 기간

172.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형사 소송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국내에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Kudła v. Poland* [GC], 2000, §§ 159-160; *Nuvoli v. Italy*, 2002, § 34-37; *Stratégies et Communications and Dumoulin v. Belgium*, 2002, §§ 52-56; *Kangasluoma v. Finland*, 2004, §§ 48-49; *De Clerck v. Belgium*, 2007, §§ 84-86; *McFarlane v. Ireland* [GC], 2010, §§ 115-129; *Dimitrov and Hamanov v. Bulgaria*, 2011, §§ 91-99; *Michelioudakis v. Greece*, 2012, §§ 53-54; *Panju v. Belgium*, 2014, §§ 54-77; *Galea and Pavia v. Malta*, 2020, §§ 59-65.

5. 민사 소송 기간

173.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국내법에 따라 민사 소송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Konti-Arvantini v. Greece*, 2003, §§ 29-30; *Hartman v. the Czech Republic*, 2003, §§ 82-84; *Doran v. Ireland*, 2003, §§ 62-69; *D.M. v. Poland*, 2003, §§ 48-50; *Lukenda v. Slovenia*, 2005, §§ 87-88; *Sürmeli v. Germany* [GC], 2006, §§ 102-116; *Rumpf v. Germany*, 2010, §§ 51-52; *Finger v. Bulgaria*, 2011, §§ 84-91; *Ümmühan Kaplan v. Turkey*, 2012, §§ 56-58; *Glykantzi v. Greece*, 2012, §§ 54-57; *Vlad and Others v. Romania*, 2013, §§ 113-125; *Gazsó v. Hungary*, 2015, §§ 21; *Valada Matos das Neves v. Portugal*, 2015, § 101; *Brudan v. Romania*, 2018, §§ 72-91; *Marshall and Others v. Malta*, 2020, §§ 82-90; *Bara and Kola v. Albania*, 2021, §§ 122-124.

174. *Krasuski v. Poland*, 2005 (§§ 69-73)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폴란드에서는 2004년 “쿠드라(Kudła)”법 발효 후 사법 절차 지연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사법 절차 중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되기에 충분한 확실성을 확보했다.

175. *Titan Total Group S.R.L. v. Republic of Moldova*, 2021 (§§ 86-91)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송 기간이 총18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보상적 구제조치가 실효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보상적 구제조치와 관련된 소송 기간은, 특히 보상 절차가 일반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소송 기간을 평가할 때와는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Gagliano Giorgi v. Italy*, § 69 참조). 국가는 가능한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소송 기간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집행 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ibid.*, § 73).

6. 행정 절차 기간

176. 재판소는 *Daddi v. Italy* (dec.), 2009 사건에서 행정 절차 기간이 불합리적으로 지연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약식심리(expedited hearing)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핀토” 구제조치는 이러한 절차 기간에 실효성을 갖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핀토법”에 따라 관할항소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177.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행사 절차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국내에 부재했다는 이유로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Martins Castro and Alves Correia de Castro v. Portugal*, 2008, §§ 56–57 및 66; *Vassilios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2010, §§ 34–35; *Olivieri and Others v. Italy*, 2016, § 48–71.

7. 집행 절차 기간

178.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국내 법원 판결의 집행을 강제하거나 집행 지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국내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Zazanis v. Greece*, 2004, §§ 45–49; *Amat-G Ltd and Mebagishvili v. Georgia*, 2005, §§ 53–54; *Ramadhi and Others v. Albania*, 2007, §§ 46–53; *Burdov v. Russia (no. 2)*, 2009, §§ 101–117; *Abramiuc v. Romania*, 2009, §§ 121–132; *Yuriy Nikolayevich Ivanov v. Ukraine*²⁰, 2009, § 69; *Ilyushkin and Others v. Russia*²¹, 2012, §§ 34–44; *Manushaqe Puto and Others v. Albania*, 2012, §§ 72–84; *Geras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157–166.

179. *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2020 (§§ 178–222)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산 정권에서 도용한 재산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 최종 판결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이를 위한 새로운 구제조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를 각하했다. 새로운 구제조치는 피청구국이 *Manushaqe Puto and Others v. Albania*, 2012 사건의 시범 판결에 따라 2015년 마련한 것이다(본 해설서의 314항 참조).

8. 제6조제2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협약 제6조제2항 – 무죄 추정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HUDOC 주제어

무죄 추정(6-2)

180. 재판소는 한 사건에서 제6조 2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181. *Konstas v. Greece*, 2011 (§§ 56–57) 사건에서 재판소는 장관 2명이 의회에서 청구인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죄 추정 권리를 침해했고, 형사 법원에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제6조제2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소송으로는 침해

20. 협약 제6조제1항 및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 위반

²¹ 협약 제6조제1항 및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 위반

협약에 대해 완전히 보상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182. 반면 *Januškevičienė v. Lithuania*, 2019 (§§ 60–63 및 6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3자에 대한 형사 절차 과정에서 무죄 추정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민법상 구제조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6조제2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F. 제7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²²

협약 제7조 - 죄형법정주의

“1.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사상 유죄가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형사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그 행위 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HUDOC 주제어

법 없이는 형벌이 없다(Nulla poena sine lege)(7-1) - 소급(7-1)

183. 재판소는 한 개 사건에서 제7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84. *Gouarré Patte v. Andorra*, 2016 (§§ 41–43) 사건에서 재판소는 새로운 형법의 유리한 조항 적용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제7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이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형벌에만 적용되고, 전문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의 본안을 검토하지 않고 변경 신청을 각하했다. 또한 구제조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새로운 안도라 형법(Andorran Criminal Code)은 보다 관대한 형법의 소급성을 보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관련 법원에서 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의 조항은 형을 선고한 법원에 자발적 변경을 명령했을 뿐이다.

G. 제8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²³

협약 제8조 -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공권력은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²² [협약 제7조에 대한 해설서](#)(죄형법정주의) 참조.

²³ [협약 제8조에 대한 해설서](#)(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참조.

HUDOC 주제어

추방(8) - 범죄인 인도(8) - 적극적 의무(8) - 사생활에 대한 존중(8-1) -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8-1) - 주거에 대한 존중(8-1) - 통신에 대한 존중(8-1)

185. 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에서 제8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86. 그러나 재판소가 절차적 측면에서 제8조 위반으로 판결한 경우, 제8조 청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Libert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8, § 73; *Roman Zakharov v. Russia* [GC], 2015, § 307). 반면 *B.A.C. v. Greece*, 2016 (§§ 46-47)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고, 이러한 결과를 참작하여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또한 *Sargsyan v. Azerbaijan* [GC], 2015, §§ 272-274; *Dorđević v. Croatia*, 2012, § 168 참조).

1. 사생활에 관한 권리 존중

187. 재판소는 사생활권 존중에 관한 청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을 처리했다.

a. 이동의 자유

188. 당국의 행위가 협약 제4의정서 제2조에 보장된 출국권 또는 협약 제8조에 보장된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가 제기된 경우, 협약 제13조에 따라 관련인이 적절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국내 기구 앞에서 당사자주의 절차로 인해 청구가 제기된 조치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국내법체계를 갖춰야 한다 (*Riener v. Bulgaria*, 2006, § 138).

189. *Riener v. Bulgaria*, 2006 (§§ 138-143) 사건에서 재판소는 세금 미납으로 여행 금지를 당한 청구인을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 부재는 제4의정서 제2조와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본 해설서에서 제4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에 대한 부분 참조).

b. 직무행위

190. *S.W. v. the United Kingdom*, 2021 (§§ 70-74)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가정법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해 가진 비판적 판단으로 인해 지역 당국과 관련 전문 기관에 대한 청구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제8조 및/또는 관습법에 근거하여 확립된 기본적인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구인의 변호사는 청구인에게 판사측에서 선의 부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낮아 실제로 청구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자문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보상금 청구를 인정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진행했고,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c. 구금

191. *Wainwright v. the United Kingdom*, 2006 (§§ 54-56)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도관이 교도소 방문자를 알몸 수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나 민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상원은 특히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교도관이 공개한 과실 행위가 민사 책임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192. *Gorlov and Others v. Russia*, 2019 (§§ 109–110)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원에서 해석한대로 국내법이 이익형량(balancing exercise)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국내법에서는 재소자 감방을 상시 비디오 감시하는 상황의 비례성에 대해 재소자들이 사법 심사를 요구할 수 없어 사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93. *Maslák v. Slovakia (no. 2)*, 2022 (§ 165)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3조에 규정된 실효적 구제조치는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국내 당국 또는 법원이 재판소 청구의 실질적 내용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결한 *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83) 사건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제8조에 근거한 청구의 경우, 특히 국내 당국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d. 환경

194.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137–142) 사건에서 야간 비행 소음 심사 범위 제한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으로 이어졌다. 국내 법원의 심사 범위가 비합리성, 위법성, 명백한 불합리성과 같은 고전적인 영국 공법 개념으로 제한됐고, 당시 야간 비행 증가에 대한 청구가 히드로 공항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또는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했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e. 파산

195. *Albanese v. Italy*, 2006 (§§ 73–77) 사건에서 재판소는 파산자에게 부과되고 파산 명령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개인 자격 박탈 여부 또는 연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 부재를 이유로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f. 법률사무

196. *Özpinar v. Turkey*, 2010 (§§ 82–88)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생활 관련 이유로 해임된 판사를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국가법률서비스위원회(National Legal Service Council)의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 패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항소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생활 중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과 직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다.

g. 성적 지향

197.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 151–15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국내 법원의 차별적 태도로 국내법에 따른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저해되었으므로 제8조와 연계한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경우, 국내 법원이 사전에 효과적인 조사 없이 페이스북에서 심각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적용되지 못했다.

198. *Valaitis v. Lithuania*, 2023 (§§ 93–1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인터넷의 동성애 혐오 댓글에 대한 수사 중단에서 당국의 편견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8조와 함께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사건 판결에 따라 국가당국은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지침과 권고안을 도입했고, 검사와 판사의 결정과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혐오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당국의 차별적 태도가 더 이상 분명하지 않으며, 국내 관행을 통해 혐오범죄 예방, 적발 및 진압에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h. 명예

199. *Bastys v. Lithuania*, 2020 (§§ 67-87) 사건에서 청구인(의회 부의장)은 그의 기밀정보 취급허가를 심사한 국가안전보위부(State Security Department)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트에 근거하여 기밀정보 취급허가를 거부한 의회 의장의 결정에 대해 행정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보상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장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부의장이 자진 사임하여 이 구제조치가 사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i. 체류

200.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2012 (§§ 370-372) 사건에서 재판소는 슬로베니아의 독립 후 영주권등록부에서 “삭제”된 개인의 거주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j. 비밀감시 및 개인정보 보존

201. 감시 조치는 비밀성으로 인해 특히 감시가 진행 중일 때는 관련 당사자가 스스로 구제조치를 찾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제13조에 따른 “실효적 구제”는 본질적으로 모든 비밀감시 제도에 내재된 구제 범위를 감안할 때 가능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의미해야 한다(*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 §§ 68-69). 감시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객관적인 감독 기구로 충분할 수 있다. 일단 감시 조치가 공개되면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개인이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Rotaru v. Romania* [GC], 2000, § 69).

202. 비밀감시조치는 개별 사례에서 남용되기 쉽고 이러한 남용이 민주주의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사에게 감독권을 맡겨 사법적 감독을 통해 독립성,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시 조치가 종료되면 제한 조치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생활권 행사를 침해 받은 당사자가 관련 절차를 심사받으려면 관련 조치가 채택된 날짜 및 조치를 명령한 당국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2015, §§ 233, 287 및 291; *Irfan Güzel v. Turkey*, 2017, §§ 96 및 98-99).

203. *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 (§§ 65-72) 사건에서 일부 당국은 “G10”법에 근거하여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편물을 열어 검사하고, 전보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 통화를 감청 및 녹음할 수 있게 되었다. G 10에 따르면 제한 조치 명령 및 시행을 법원에 요청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감시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몇 가지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1970년 판결에 따라 관할 당국은 감시가 중단되고 제한 조치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통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은 통지를 받으면 행정법원에 “G10법” 적용의 적법성과 명령된 감시 조치의 법률 준수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선언 소송, 개인이 피해를 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문서 파기 또는 적절한 경우 반환 소송, 마지막으로 이들 구제조치가 모두 효과가 없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에 기본법 위반 여부 판결 요청 등 다양한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법에 따라 제공되는 일련의 구제조치는 특히 해당 사건의 사생활과 통신 존중 측면에서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요건을 충족한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주요 직책 후보자를 감시하는 비밀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Leander v. Sweden*, 1987, §§ 78-84 사건과 보안기관의 전화 통화 감청 및 녹음 및 개인정보 보존에 관한 *Amann v. Switzerland*[GC], 2000, §§ 89-90 사건 참조.

204. *Rotaru v. Romania* [GC], 2000 (§§ 68-73)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 대리인의 개인 사생활 정보 보존 또는 이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Segerstedt-Wiberg and Others v. Sweden*, 2006 (§§ 116-122) 사건에서도公安 경찰서 명부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거나 파일을 파기하거나 파일에 저장된 정보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205. *Irfan Güzel v. Turkey*, 2017 (§§ 100-109) 사건에서 재판소는 전화를 도청당한 피의자가 도청 결정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k. 개인 정보 이용 및 공개

206. 의료 정보 공개에 관한 *Anne-Marie Andersson v. Sweden*, 1997 (§§ 41-42)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료 당국이 사회복지사업에 기밀 및 개인의료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협약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가 된 정보 공개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행사를 제한했지만 스웨덴 법을 준수했고 “건강 또는 도덕”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라는 정당한 목표를 추구했다. 청구인에게 정보 공개 조치를 통지했고,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고 정신의학 기록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밀성이 보호됐기 때문에 제한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207. *Panteleyenکو v. Ukraine*, 2006 (§§ 82-84)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개심리에서 정신의학 기밀정보를 공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심리를 비공개로 열면 일반에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심리에서 당사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게 공개된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거나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항소할 수 있었더라도, 법원 사건 파일에서 정신의학 기밀 정보 공개가 중단되거나 불법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이 구제조치는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208. *X and Others v. Russia*, 2020 (§§ 73-79)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법 결정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청구인들의 자녀들이 입양아라는 정보가 공개되었으나 사법 제도의 문제로 인한 비금전적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8조에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209.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1999 (§§ 136-139) 사건은 직업적 맥락에서의 개인정보 사용 사례를 보여준다. 사건은 동성애자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가 사생활을 존중받을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지만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0. *Karabeyoğlu v. Turkey*, 2016 (§§ 128-132) 사건은 징계 조사에서 범죄 수사 중 도청으로 얻은 정보 사용에 대한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제8조에 비추어 해석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1. *Nada v. Switzerland* [GC], 2012 (§§ 209-214) 사건에서는 스위스 “탈레반” 조례에 첨부된 명단에서 청구인의 이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국내 법원에 제소하여 협약 청구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당국은 청구인의 청구 본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특히 연방법원은 스위스가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검증할 자격이 있지만, 인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재를 직접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연방법원은 UN에 명단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제13조에 따른 실효적 구제조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2. 가족 생활에 대한 존중

212. 특정 성격 및 이해관계를 수반하고 법적 절차의 기간이 청구인의 가족생활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따라서 협약 제8조에 따른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가 예방적 구제조치와 보상적 구제조치를 동시에 시행할 의무가 있는 보다 엄격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2010, § 48; *Bergmann v. the Czech Republic*, 2011, §§ 45-46; *Kuppinger v. Germany*, 2015, § 137). 재판소는 이해당사자가 사후(*posteriori*) 금전적 보상금 지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보상적 구제조치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가 공허한 허상에 불과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2010, § 48).

213. 재판소는 절차적 측면에서 제8조를 위반한 사건에서 제13조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2010; *Bergmann v. the Czech Republic*, 2011). 제8조에는 절차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한 조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특히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항에서 보호하는 이익을 적절히 존중해야 한다(*W. v. the United Kingdom*, 1987, §§ 62 및 64; *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1995, § 92; *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72-73).

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2010 (§§ 48-51) 사건에서는 청구인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어머니가 해외로 데려간 자녀를 즉시 송환시키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송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측 불가능한 변동을 방지하고, 아동과 청구인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또는 청구인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필요했다. 재판소의 관점에서는 청구인이 구제조치를 통해 이들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금전적 보상이 적절할 수 있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13조에 근거하여 제소할 경우 동일한 고려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ergmann v. the Czech Republic, 2011 (§§ 46-51) 사건에서 재판소는 *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2010 사건에서 재판소가 고려했던 사항들이 국제아동유괴 맥락뿐 아니라 절차 중 당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214. *Kuppinger v. Germany*, 2015 (§§ 138-145) 사건에서 재판소는 친권에 대한 판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국내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절차는 청구인의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간에 따라 미리 결정될 위험이 있는 사건 범주에 속했다.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는 “구제법(Remedy Act)”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절차가 시작된지 1년 6개월 만에 시행되었으나 이번 사건처럼 진행 중인 절차를 신속하게 촉진하는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용하는 다른 두 가지 구제조치 또한 실효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215. *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9-110) 사건에서 재판소는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어린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의심이 제기되어 어머니로부터 자녀를 분리시킨 후 지방 당국의 소송과 관련된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은 물론 의료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지방당국이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을 받거나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행 가능한 보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업이 계부의 성적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심사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을 이유로 재판소가 제3조 또는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D.P. and J.C. v. the United Kingdom*, 2002, §§ 136–138 사건 참조.

216. *Sabou and Pircalab v. Romania*, 2004 (§§ 53–56) 및 *Iordache v. Romania*, 2008 (§§ 57–67) 사건에서 재판소는, 수감된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 유형이나 미성년자 자녀의 이익에 대한 법원의 검토 없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에 대해 부과되는 법 집행에 의한 부수적 형벌로서, 친권 행사에 대한 전면적이고 절대적인 금지의 자동 적용과 관련하여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족한 점에서, 제8조에 비추어 해석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217. *Mik and Jovanović v. Serbia* (dec.), 2021 (§§ 47–52) 사건에서 재판소는 새로운 법률체계에 세르비아 산부인과 병동에서 실종된 아기의 부모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참작하여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를 종료했다(*Zorica Jovanović v. Serbia*, 2013, § 92 사건에서 재판소의 요청 관련). 2020년 2월 법은 DNA 데이터베이스와 판사, 경찰관, 부모 교육을 포함한 사법 및 비사법적 절차를 제공했다.

3. 주거에 대한 존중

218. 국가 대리인이 집과 가재도구를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가 제기된 경우, “실효적 구제조치” 개념은 적절한 보상금 지급 이외에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와 청구인이 조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한다(*Menteş and Others v. Turkey*, 1997, § 89).

219. *Menteş and Others v. Turkey*, 1997 (§§ 90–92)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국경수비대가 청구인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사생활, 가족생활, 주거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법원에 제소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조치의 효과가 약화됐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맥락에서 주택을 전소시킨 화재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해 재판소가 협약 제8조와 제1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Nuri Kurt v. Turkey*, 2005, §§ 117–122 사건 참조.

220. 키프로스 북부에 거주하던 주민을 이주시킨 *Cyprus v. Turkey* [GC], 2001 (§§ 193–194) 사건에서는 피청구국이 키프로스 북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된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에게 이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하지 못해 제8조와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해석된 협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상황에서 집과 재산을 잃은 난민을 위한 구제조치가 부족해 재판소가 협약 제8조와 제1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해석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2015, §§ 213–215 및 *Sargsyan v. Azerbaijan* [GC], 2015, §§ 269–274 사건 참조.

221. 가택 수색에 관한 *Posevini v. Bulgaria*, 2017 (§§ 83–87)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택과 사진 스튜디오를 수색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실효적 구제조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제8조에 비추어 해석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에서 실효적 구제조치에 대한 개념은 청구인들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맥락에서 *Panteleyenko v. Ukraine*, 2006, §§ 78–81 사건과 *Peev v. Bulgaria*, 2007, § 70 사건 참조. 이들 사건은 각각 공증인에 대한 소송이 전심 단계에서 종결된 후 공증인 사무실을 수색한 후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비판한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후 공무원 사무실을 불법 수색한 데 따른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됐다.

Keegan v. the United Kingdom, 2006 (§§ 41–4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추정컨대 악의를 가지고 경찰이 강제로 들어와 가택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비례성 또는 합리성을 심사하지 못했고 이러한 경우 경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어 청구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은 악의가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러한 종류의 과실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통신에 대한 존중

222. 재판소는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에 관한 청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을 처리했다.

223. 재소자의 통신에 관한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3 (§§ 114–1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서신 관리, 차단 및 보류 문제에 관해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및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Frérot v. France, 2007 (§ 66)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도관이 서신 전달을 거부했을 경우 재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은 서한 전달 거부는 내부 규정이므로 월권소송에 의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도소장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주장에는 청구인에게 제13조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구제조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224. 파산자의 통신에 관한 *Bottaro v. Italy* 사건에서 재판소는 12년 6개월 이상 계속된 통신 통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국내법에 부재한 것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5. 망명 및 추방

225. 추방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더 이상 추방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아 협약 제8조 위반 혐의에서 피해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제13조의 목적상 반드시 청구인의 피해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2012 (§§ 86–100)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을 제8조 위반 혐의에서 더 이상 피해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청구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추방당하기 직전 제8조에 근거한 청구에서 실효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혐의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라는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청구인의 '피해자' 지위 상실에 관한 정부의 선결적 항변을 배척했다.

226. 이민 사건 관련 사건에서 재판소의 유일한 관심은 보충성의 원칙에 유념하여 국내 절차의 실효성을 심사하고 인권을 존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De Souza Ribeiro v. France* [GC], 2012, § 84).

227. *B.A.C. v. Greece*, 2016 (§§ 37–47) 사건에서 재판소는 망명자문위원회의 우호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Order)가 12년 동안 청구인의 망명 신청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최고행정법원을 포함한 그리스 사법 당국이 튀르키예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것은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228. 사생활 및 가족생활 침해 혐의를 이유로 추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자동 집행정지 효과가 있어야만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이 추방 위협으로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가 제기된 이민 문제의 경우,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에 따르면 국가는 관련인에게 추방 또는 체류 거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된 적절한 국내 포럼을 통해 보호 절차를 가지고 관련 문제를 철저히 심사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Al-Nashif v. Bulgaria*, 2002, § 133; *M. and Others v. Bulgaria*²⁴, 2011, §§ 122-133;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2012, § 83). 집행정지의 성격을 침해하지 않고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갖고 자의적 결정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국가 당국”이 실제로 개입해야 한다(*ibid.*, § 93).

229.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경우, 일부 구제조치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적, 법적 측면 모두에서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제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독립 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구제조치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관할 독립 항소기관은 추방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통보 받아야 하며, 그 이유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밀정보 취급허가 후 특별대리인을 통해 당사자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조치가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침해한다면 관련 공익과 개인의 권리 간에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심사해야 한다(*Al-Nashif v. Bulgaria*, 2002, § 137).

230. *Al-Nashif v. Bulgaria*, 2002 (§§ 134-138)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 법원에 국가 안보 문제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 안보에 근거한 추방 조치에 대한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체류 허가를 철회한 명령에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소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한 *Musa and Others v. Bulgaria*, 2007, §§ 70-73, 사건 참조.

231. *M. and Others v. Bulgaria*, 2011 (§§ 124-125 및 127) 사건에서 재판소는 최고행정법원 앞에서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제3조 및 8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첫 번째 청구인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될 경우 학대를 받거나 처형당할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청구인에게 이들 위험이 아프간 당국에서 기인했고 아프간 당국이 청구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여했다(제3조에 근거한 청구인의 청구에 관한 본 해설서의 131항 참조).

232.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2012 (§§ 86-100)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원에 브라질을 통한 청구인의 추방 명령에 대한 중단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제출한지 50분도 되지 않아 명령서가 집행되어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추방 명령이 매우 긴급하게 집행되어 실제로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프랑스 당국은 청구인의 추방이 법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수도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령 기아나의 지리적 위치, 이민에 대한 강한 압박 또는 법원 업무가 과중 되고 적절한 사법 집행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은 통상적인 법률과 적용 방식에 대한 예외를 정당화할 수 없다. 청구인이 추방당하기 직전에 실효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없었고, 이는 추후 체류 허가증 발급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²⁴ 제3조와 제8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위반

233. *Abuhmaid v. Ukraine*, 2017 (§§ 119–126) 사건에서 재판소는 팔레스타인 당국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우크라이나 이민 자격이 불확실한 것과 관련하여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우크라이나 체류가 불확실하고 체류자격을 합법화하지 못하는 문제는 청구인의 추방 거부로 해결되지 않았고, 이민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는지 불분명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우크라이나 체류와 자격을 합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국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국이 우크라이나 체류 연장과 자격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청구인에 실효적이고 이 가능한 절차를 제공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무시했다고 말할 수 없다.

H. 제9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²⁵

협약 제9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예배, 선교, 행사, 의식을 통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HUDOC 주제어

종교의 자유(9-1) - 종교 또는 신념의 표명(9-1)

234. 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에서 제9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35. 그러나 재판소가 절차적 측면에서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경우, 제13조에 근거한 청구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2007, § 137).

236. *Efstratiou v. Greece*, 1996 (§§ 48–50) 사건과 *Valsamis v. Greece*, 1996 (§§ 47–49)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퍼레이드 참여를 거부한 학생에게 내려진 1일 정학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협약 제9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보상 청구의 전제조건인 학교의 정학 조치가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사법 결정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은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다른 구제조치의 경우 정부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용 사례를 인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실효성이 확립되지 못했다.

237. *Hasan and Chaush v. Bulgaria* [GC], 2000 (§§ 97–104) 사건에서는 종교 지도자 선거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없었고 이는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에 따르면 제13조는 모든 신자가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종교 공동체 지도부 등록에 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신자들의 이익은 지도자에게 의지하고 지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다. 국가는 종교 공동체 대표만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 대표에게는 사법적

²⁵ [협약 제9조에 대한 해설서](#)(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참조.

구제조치가 제공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각이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적 문제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여, 첫 번째 구제조치는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다른 두 대법원 항소도 실효적 구제조치가 되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형사 절차가 개시될 경우 어떻게 청구인들의 청구 내용 심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다른 구제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238.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2001 (§§ 137-139)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국의 공식 교회 인정 거부에 대한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교단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몰도바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와 다른 별개의 교회에 모여 자신들의 종교를 공동으로 표명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청구권을 요구한 청구인들의 청구에 답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한 베사라비아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대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또한 1992 종교교단법(Religious Denominations Act)에는 인정 절차 관리 및 분쟁 시 구제조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종교의 자유권에 대해 청구했으나 국가 당국으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했다.

239. *Loste v. France*, 2022 (§§ 67-78)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위탁 가정에 배치되어 생활하는 동안 공인 보육사의 남편에게 12년간 학대를 받은 것과 청구인과 그 가족의 이슬람교 신앙을 존중하기 위해 종교적 중립 조항의 형태로 제공된 약속을 가족이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협약 제3조 및 제9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행정법원이 4년의 소멸시효 원칙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송을 각하하며 지나친 형식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 법원은 법에 규정된 대로 청구인이 행정당국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날짜에 대해 청구인에게 질문 하지 않았다.

I. 제10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²⁶

협약 제10조 - 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권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허가 제도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국가안보, 영토보전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위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를 위해,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의 유지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형식과 조건에 따라야 하고, 제한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UDOC 주제어

표현의 자유(10-1)

240. 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에서 제10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²⁶ [협약 제10조에 대한 해설서](#)(표현의 자유) 참조.

241. 그러나 재판소가 절차적 측면에서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경우, 제13조에 근거한 청구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Zarakolu and Belge Uluslararası Yayıncılık v. Turkey*, 2004, § 45; *Bucur and Toma v. Romania*, 2013, § 170; *Karácsony and Others v. Hungary* [GC], 2016, § 174).

242. *Wille v. Liechtenstein* [GC], 1999 (§§ 76–78) 사건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왕자의 의견에 따라 청구인을 공직에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법상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왕자에 대해 제기된 청구의 재결이 인정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제10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43. *Lindberg v. Sweden* (dec.), 2004 사건에서 바다표범 사냥 조사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노르웨이의 판결을 스웨덴 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근거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10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에 근거하여 청구를 각하했다. 이 사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는 노르웨이의 주요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다룰 수 없고(청구인은 이전에 노르웨이에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한이 만료되어 유럽인권위원회에 의해 각하됨) 스웨덴에서의 집행 절차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13조의 목적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제기했는지 의문이었다. 제13조가 적용되더라도 집행을 반대할 강력한 이유는 없었다. 제3심 수준의 관할권에서 스웨덴 법원은 제13조의 목적상 청구인에게 충분히 실효적 구제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 요청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 내용을 심사했다.

244. *Peev v. Bulgaria*, 2007 (§§ 71–73)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무원인 청구인이 검찰총장을 고발한 서신을 언론에 공개한 후 명백히 보복성으로 보이는 사무실 수색과 불법 해고가 이어졌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혐의로 실제로 제소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제10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45. *Kayasu v. Turkey*, 2008 (§§ 114–123) 사건에서 재판소는 최고사법관평의회(Supreme Council of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앞에서 군대모욕과 권한남용으로 인한 검사 해임 및 형사상 유죄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족하여 제10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최고평의회 산하 기구가 청구인의 항소 심사 요청을 받았으나, 특히 평의회 의원이 항소심의위원회 의원으로 심사에 참여했을 때 평의회 절차 규칙에 구성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명시되지 않아 이들 산하 기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즉 청구인의 사건을 심사하고 문제가 된 제재를 선언한 평의회 의원들에게 항소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항소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해임 결정을 심사했고, 이 중 4명은 청구인이 반대했던 결정을 내린 평의회 의원이었다.

246. *Kenedi v. Hungary*, 2006 (§ 48)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권리 집행에 반대하는 것은 제10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이 국가의 구(舊)안보기관에 관한 문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법원 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려고 했으나 피청구국 기관이 이를 명백히 방해했다. 결국 청구인은 국가안보기관의 기능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발표하지 못했다.

247. *Bulgakov v. Russia*, 2020, §§ 47–49, *Engels v. Russia*, 2020, §§ 42–44, *OOO Flavus and Others v. Russia*, 2020, §§ 53–55, *Vladimir Kharitonov v. Russia*, 2020, §§ 55–57 사건에서 재판부는 국내 법원이 청구 본안 심사를 거부하고 청구인의 웹사이트 차단 명령이 미치는 영향의 합법성 또는 비례성을 심사하지 않은 것은 제10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J. 제11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²⁷

협약 제11조 - 집회와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HUDOC 주제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11-1) - 결사의 자유(11-1)

248. 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에서 제11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49. 그러나 재판소가 절차적 측면에서 제1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경우, 제1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에 근거한 청구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Young, James and Webster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보고서, 1979, § 67; *Tüm Haber Sen and Çınar v. Turkey*, 2006, §§ 41-42; *Ekşi and Ocak v. Turkey*, 2010, § 38; *Chernega and Others v. Ukraine*, 2019, § 285).

250. 평화적 집회권 관련 항소에 관한 실효적 구제조치의 경우, 특정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공개회의에서 회의 개최 시점이 회의의 정치적 및 사회적 비중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은 민주적 토론의 본질이다. 따라서 국가 당국은 협약 제11조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집회를 불허할 수 있지만 집회 주최측이 계획한 날짜는 변경할 수는 없다. 특정 사회 문제가 현재 사회적 또는 정치적 논쟁에서 의미 또는 중요성을 잃은 후 공개 집회가 조직되면 집회의 영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적시에 행사되지 못한다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 국가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합리적인 기한을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 82-83).

251. *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 83-84) 사건에서 재판소는 계획된 동성애혐오 반대 시위 및 집회 날짜가 지난 후에 불법적인 집회 불허 결정을 무효화한 것은 제1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실효적 구제조치 개념에서는 청구인들이 계획된 행사 개최일 이전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개최일 3일 전까지)이 명시된 준거법을 준수했다. 반면 계획된 시위 날짜 전에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는 모두 사후적(post-hoc)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252. 퀴어 퍼레이드 개최 요청을 반복적으로 불허한 당국의 행위를 심사하거나(*Alekseyev v. Russia*, 2010, §§ 97-100) 당국이 예정된 날짜 이전에 공개 집회 장소, 날짜 및 시간 또는 조직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집행 가능한 사법 결정을 얻기 위한(*Lashmankin and*

²⁷ 협약 제11조에 대한 해설서(집회와 결사의 자유) 참조.

Others v. Russia, 2017, §§ 342-361) 사전적 구제조치 부재는 모두 제1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13조를 위반한 것이다.

러시아는 주최측의 공개 행사 통지 기한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반면 계획된 공공 행사 개최일 전에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는 없다. 공공 행사 주최측이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조치는 사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구제가 될 수 없다. 또한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2017 (§ 360) 사건에서 공개 행사 장소, 시간 또는 진행 방식 변경 제안의 합법성 검토로 사법 심사 범위가 제한됐고, 법적으로 “비례성” 심사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실제로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

253. 결사의 자유 관련 청구의 구제조치에 관한 *Metin Turan v. Turkey*, 2006 (§§ 36-38) 사건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지사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보내는 결정에 대해 국가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족한 것은 제1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사의 막강한 권한에 맞서 전근에 관한 사법적 심사가 부재하면 권한 남용을 방지하거나 간단히 관련 결정의 합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 필요한 구제조치는 법적으로나 실제로나 효과적이지 못했다.

254. *Karaçay v. Turkey*, 2007 (§§ 44-45) 사건과 *Kaya and Seyhan v. Turkey*, 2009 (§§ 41-42)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위에 하루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노조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1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경고와 같은 징벌 처분에 관해 국가당국 앞에서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관련인이 가능한 남용을 방지하거나 경고와 같은 징계 조치의 합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 이는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작업장에서 노조활동을 조직한 것에 대해 경고를 받은 노동조합 대표를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했던 *Doğan Altun v. Turkey*, 2015 (§§ 58-60)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제가 된 징계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행정 항소를 제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조조치가 되었다.

K. 제1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협약 제12조 - 혼인할 권리

“혼인 적령기의 남자와 여자는 이 권리행사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HUDOC 주제어

남자와 여자(12) - 혼인(12)

255. 두 사건에서 재판소는 수감 중 혼인을 불허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기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 문제를 다루었다.

256. *Frasik v. Poland*, 2010 (§ 104) 사건에서 재소자가 수감 중 혼인권을 침해한 결정에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것은 제1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됐다.

257. *Jaremwicz v. Poland*, 2010 (§§ 70-71) 사건에서 재판소는 수감 중 재소자의 혼인 불허에 대한 적절한 구제 부재는 제1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교도소 법원에서 최초 불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절차는

거의 5개월 동안 이어졌고 교도소 당국이 결국 원래 결정을 변경할 때까지 이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절차는 통해 청구인에게 필요한 구제, 즉 제12조에 따른 협약 청구 내용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뒤늦게 혼인 허가를 부여한 것도 이 조항이 요구하는 구제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L. 제34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²⁸

협약 제34조 - 개별적 제소

“재판소는 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비정부조직, 개인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접수한다.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HUDOC 주제어

청원(34) - 피청구국(34) - 개인(34) - 비정부조직(34) - 개인집단(34) - 피해자(34) - 민중소송(34) - 청구인적격(34) - 제소권 행사 방해(34)

258. 재판소는 한 사건에서 제34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59. *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2010 (§§ 162-166) 사건에서 당국은 규칙 39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항소 심사 전 사형이 내려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당국으로 이송되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을 위험이 컸다. 이는 또한 상원에 항소하는 실효성을 부당하게 무효화하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34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M.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²⁹

제1의정서 제1조 - 재산의 보호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HUDOC 주제어

적극적 의무(P1-1) - 재산(P1-1-1) - 평화적 재산 향유(P1-1-1) - 간섭(P1-1-1) - 재산의 박탈(P1-1-1) - 국제법의 일반원칙(P1-1-1) - 재산 사용 규제(P1-1-2) - 일반의 이익(P1-1-2) - 세금 확보 (P1-1-2) - 부담금 또는 벌금 확보(P1-1-2)

²⁸ 협약 제34조 및 제35조에 대한 [적격 기준에 대한 실무 해설서\(Practical Guide on Admissibility Criteria\)](#) 참조.

²⁹ [제1의정서 제1조에 대한 해설서\(재산의 보호\)](#) 참조.

260. 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에서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61. 그러나 재판소가 절차적 측면에서 제1의정서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경우, 이 조항과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에 근거한 청구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Velikovi and Others v. Bulgaria*, 2007, §§ 251-252; *Džinić v. Croatia*, 2016, § 82).

262. 재판소는 협약 제13조로 보호되는 이익과 제1의정서 제1조로 보호되는 이익은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전자는 보호 절차, 즉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제공하지만, 후자에 내재된 절차적 요건은 평화적 재산 향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두 조항이 제공하는 보호장치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두 조항에 따라 일련의 동일한 사실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Iatridis v. Greece* [GC], 1999, § 65).

263. 재산 반환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Iatridis v. Greece* [GC], 1999 (§§ 65-66) 사건에서 퇴거 명령 철회 후 임차인이 당국의 야외상영관 반환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 부재는 제1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으로 판결됐다. 청구인은 퇴거 명령 철회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청구를 신청하여 철회 판결을 받았으나, 재무부 장관이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해당 구제조치는 “실효적”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264. *Vasilev and Doycheva v. Bulgaria*, 2012 (§§ 58-61) 사건에서 공산정권 하에서 집단화된 농지 반환에 대한 당국의 부작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 부재는 제1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으로 판결됐다. 행정절차법에 행정 절차 처리를 촉진하는 조항이 마련됐으나 2007년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절차를 착수한 청구인들의 청구 중에는 이미 몇 년간 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부는 농지 반환 절차 및 청구인들의 특정 상황에서 이들 조항이 적용됐고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국내 법원 판결도 제시하지 않았다.

265. *Driza v. Albania*, 2007 (§§ 115-120) 사건에서 청구인 친척의 재산 불법 국유화에 대한 법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적절히 집행하기 위한 절차 또는 입법체계 부재는 제1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으로 판결됐다. 특히 정부는 반환할 수 없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를 위한 부지 계획을 채택할 적절한 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가 이 제도를 시급히 시행하거나 적절한 기한에 청구인들의 권리 결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은 낮았다.

266.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2015 (§§ 213-215) 사건과 *Sargsyan v. Azerbaijan* [GC], 2015 (§§ 269-274) 사건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집과 재산을 잃은 난민을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 부재와 이들 난민들이 여전히 자신의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은 협약 제8조와 제1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으로 판결됐다.

267. *Edward and Cynthia Zammit Maempel v. Malta*, 2019 (§§ 70-86)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법적 구제 절차가 이론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추구함에도 청구인에게 과도한 개인적 부담을 부과한 재산 명도 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비금전적 손해에 보상을 지급했으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송은 청구인들이 제기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여 강제 퇴거 명령의 취소를 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의존한 각 구제조치가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청구를 판결하는데 (두 단계의 관할권에서) 5년 이상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 법원에서 나머지 청구를 판결하는데 5년(두 단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청구인들이 손해를 구제 받기 위해 또 다른 구제조치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속적인 절차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추가적인 법적 비용과 경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었다.

268. *Marshall and Others v. Malta*, 2020 (§§ 70-81)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조치인 헌법적 구제 절차가 이론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여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임대료와 부동산의 시장 가치 간 격차가 커서 현행 임대차법이 합법적이고 적법한 목적을 추구함에도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평소 관행대로 임차인의 퇴거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유자의 재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개정된 민법 조항은 2028년 경과 기간이 끝나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의 재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임대차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8년까지 향후 임대료를 포함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구제조치는 임차인 퇴거가 유일했다. 그러나 어떠한 퇴거 조치도 집행되지 않았고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퇴거한 임차인도 없었다. 따라서 쌍방의 부작위로 인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던 3년 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보상을 지연시킬 정당한 이유가 거의 없었다. (i) 공공주택 지원이라는 적법한 목적에 의해 간섭이 정당화되었던 유사한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상업 기관, 즉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었고, (ii) 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은행은 어떤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2028년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에게 제공된 재정적 구제도 적절치 않았다. 재판소는 몰타 법원이, (i) 금전적 손해의 경우 배상금은 가능한 한 청구인이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는 지위로 가능한 복귀시킨다는 의도로 제공해야 하고, (ii) 비금전적 손해 및 관련 비용 지급 명령과 관련된 적절한 판결이 이들 보상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려했다.

269. *Cauchi v. Malta*, 2021 (§§ 75-87)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법적 구제 절차가 이론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법에 따라 부과된) 임대료 수준이 임대인에게 충분하지 못한 경우 그렇게 실효적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던 헌법 문제를 판결하는 민사 법원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동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복지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 심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판소는 제1심이든 헌법재판소 항소심이든 헌법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유리한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최소 5년 동안 더 이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제한 조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또한 동법은 임차인의 자산과 연령, 그리고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복지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시가의 최대 2%까지 점진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강제 퇴거가 없는 경우 더 이상 (국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위반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 청구인은 국내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적절한 임대료를 받았어야 했다. 수 년에 걸친 점진적 임대료 인상이 그러한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임대료 설정은 임차인의 자산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료가 낮게 설정될 수 있어, 개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및 재정적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모든 구제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으므로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270. 재해 보상에 관한 *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 156-157)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공산업현장 폭발사고로 파괴된 가재도구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됐고 보상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른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를 거부당했다. 청구인에게 보조금 주택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제1의정서 제1조 위반 혐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인의 자격, 나아가(a fortiori) 위반 혐의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증명됐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른 청구에 대해 협약 제13조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271.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96-198)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원이 재해 피해자에게 제공된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각한 것을 불합리적 또는 자의적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해석된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할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 절차에서 지급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들이 금전적 수당과 함께 대체 주거 공간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었고, 보상금과 실제 손실 규모의 차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내릴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물질적 손해를 평가하고 일반적인 비상 구제 계획을 통해 조치를 시행한 상황에서, 산사태로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배상책임을 지는 절대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272. *Nuri Kurt v. Turkey*, 2005 (§§ 118-1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택을 전소시킨 화재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제8조와 제1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헌병 장교를 헌병이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의 수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병 장교의 수사가 철저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해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당국의 수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273. 채무 상환에 관한 *Saggio v. Italy*, 2001 (§§ 42-44) 사건에서 재판소는 직원에게 약 6개월 가량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임시 청산 절차가 시작된 후 약 4년 2개월 동안, 청구인은 그 어떤 당국에도 밀린 급여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거나 청산인이 취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문제를 심사 받을 수 있는 다른 실효적 수단도 부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청구 진술 검증 지연과 함께 임시 청산 절차에 적용된 규칙은 실효적 구제조치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했다.

N. 제1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³⁰

제1의정서 제2조 - 교육을 받을 권리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교육 및 교수와 관련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에 일치하는 교육 및 교수를 확보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HUDOC 주제어

교육을 받을 권리(P1-2) -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존중(P1-2) - 부모의 철학적 신념에 대한 존중(P1-2)

274. 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에서 제1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75. *Olsson v. Sweden (no. 1)*, 1988 (§ 98) 사건에서 재판소는 자녀 중 한 명을 종교적으로 양육한 결과, 제1의정서 제2조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다양한 실효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1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도

³⁰ 제1의정서 제2조에 대한 해설서(교육을 받을 권리) 참조.

부모는 1980 법 발효 후 사회이사회(Social Council)의 배치 결정에 대해 시행정법원(County Administrative Court)에 항소할 수 있게 되었다. 법 발효 이후는 물론 이전에도 아동의 종교적 양육에 문제를 제기하여 양육 중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276. *Efstratiou v. Greece*, 1996 (§§ 48-50) 사건과 *Valsamis v. Greece*, 1996 (§§ 47-49)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퍼레이드 참여를 거부한 학생에게 내려진 1일 정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협약 제9조와 제1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정학 조치가 위법 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는 손해 배상 청구의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은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청구인이 의존하는 다른 구제조치의 경우, 정부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구제 조치를 사용한 사례를 인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실효성이 확립되지 못했다.

277. *Sampanis and Others v. Greece*, 2008 (§§ 58-59) 사건에서 정부는 행정부가 로마족 아동의 학교 등록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실효적 구제조치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협약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O. 제1의정서 제3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³¹

제1의정서 제3조 - 자유선거의 권리

“유럽인권협약 당사국들은 입법부의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하에 합리적인 간격을 두고 비밀투표에 의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HUDOC 주제어

자유선거의 권리(P1-3) -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P1-3) - 입법부의 선출(P1-3) - 투표(P1-3) - 입후보(P1-3)

278. 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에서 제1의정서 제3조와 연계하여 또는 이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79. 국가 법원에서 선거 후 선거권에 관한 분쟁을 심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3조에만 비추어 청구를 심사하기로 결정했고, 제13조에 따른 별도의 질문이 제기되지 않았다(*Gahramanli and Others v. Azerbaijan*, 2015, § 56; *Riza and Others v. Bulgaria*, 2015, § 95; *Davydov and Others v. Russia*, 2017, § 200). 그러나 법원에서 이들 분쟁을 심사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소가 제13조 청구에 대한 별도 심사에 참여했다(*Grosaru v. Romania*, 2010, §§ 55-57; *Paunović and Milivojević v. Serbia*, 2016, §§ 68-73).

280. 유럽 평의회 베니스 위원회는 선거 문제에 관한 모범실행강령(Code of Good Practice in Electoral Matters)에서 선거 규칙 적용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권장했다. 여러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사법적 심사를 채택했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감독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Grosaru v. Romania*, 2010, § 56).

281. 당국이 고의적인 작위와 부작위를 통해 의회 후보 출마를 막았다면 제1의정서 제3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 국가가 적절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효과적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이들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단순한 보상금 지급으로

³¹ 제1의정서 제3조에 대한 해설서(자유선거의 권리) 참조.

제한한다면, 당국이 임의로 후보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선거를 조작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제1의정서 제3조에서 보장한 다른 권리와 더불어 유의미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다지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의회 입후보권이 실효성을 잃게 된다(*Petkov and Others v. Bulgaria*, 2009, § 79).

282. 피선거권에 관한 *Mugemangango v. Belgium* [GC], 2020, §§ 125-127 및 132-139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할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므로 제1의정서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국내법은 왈론 의회(Walloon Parliament)에 의원과 관련하여 선거 유효성을 판결할 수 있는 전속 관할권을 부여했다. 이들 조항에 따라 법원은 선거 후 문제에 관한 분쟁을 처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3조에 따라 왈론 의회에 대한 청구 절차에 청구인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구제조치가 제13조의 의미상 “실효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소는 제13조에 언급된 “당국”이 반드시 엄격한 의미의 사법당국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과 유럽 각국의 다양한 선거 제도를 고려하여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삼권분립 원칙과 직결된 이 문제는 체약국이 선거 제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폭넓은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문제였다. 사법적 또는 사법적 유형의 구제조치는, 제1심이든 비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른 것이든, 원칙적으로 제1의정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283. 피선거권에 관한 *Petkov and Others v. Bulgaria*, 2009 (§§ 80-83) 사건에서 선거 당국이 최종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의회 후보자 명부에 청구인들을 재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구제 활동은 금전적 보상뿐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시간적 제약이 컸기 때문에 선거 후 구제 수단을 통해서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제13조의 요건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앞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의회 입후보권을 옹호할 수 있는 절차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선거의 합법성에 관한 분쟁 심리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심사 범위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격을 갖춘 사람과 기관만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또는 실제로 선거 과정에 참여한 다른 참가자)는 헌법재판소에 법적 절차 착수를 직접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84. *Russian Conservative Party of Entrepreneurs and Others v. Russia*, 2007 (§§ 86-89)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정 정당과 그 후보 중 한 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ntral Electoral Commission)의 출마 자격 박탈 결정과 관련하여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1의정서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의장단의 감독심의에 관한 판결은 최종적이며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심리는 불가능하다는 국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복신청은 각하되었다. 또한 당시 민사소송법에는 감독심의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다른 감독심의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독심의 절차 착수 권한은 재량적이었는데, 특정 사건이 감독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주 공무원의 결정이었고 당사자는 새로운 감독 심의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었다.

285. 재판소는 *Etxeberria and Others v. Spain*, 2009 (§§ 78-82) 사건에서 테러 조직과의 연계로 인해 불법으로 판결된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지역선거 선거인단 입후보 등록을 무효화한 것에 대해 항소 기한이 짧은 것은 제1의정서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제1심에서 3~5일을 권고한 베니스 위원회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집단의 항소장 제출 기간은 2일에 불과하여 짧았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취한 접근방식과 비교할 때 스페인이 지정한 기간이 명백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청구인들은 기한이 짧아 청구인 집단의 대표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항소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해 그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286. 선거 후 분쟁에 관한 *Grosaru v. Romania*, 2010 (§ 62) 사건에서 이탈리아 소수민족에게 할당된 의석을 청구인에게 허락하지 않은 당국의 결정에 대한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족한 것은 제1의정서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한 것으로 판결됐다. 의회 후보는 소수 민족 대표로 선정된 조직에 정해진 의석을 할당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된 선거법 조항의 해석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중앙국의 결정이 최종이라는 견해에 기반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는 선거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고지한 것이 전부였다.

287. *Paunović and Milivojević v. Serbia*, 2016 (§§ 72-73) 사건에서 재판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의 의회 직위 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1의정서 제3조에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들 법원은 본안 심사 없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이 민사절차를 통해 “백지사직”을 무효화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무효화로 청구인의 의회 권한이 복원된다고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특히 이 사건에서 이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되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청구인의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청구가 성공적으로 제기된 국내 판례법을 인용하지 못했다.

288. *Strack and Richter v. Germany* (dec.), 2016, 사건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자격 기준에 따라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의 해임이 거부된 것과 관련하여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다는 주장은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청구인들은 특정 선거 오류를 시정할 권한을 가진 연방 의회와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절차가 수행된 방식은 제1의정서 제3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실효적 구제조치를 보장했다.

289. *Galan v. Italy* (dec.), 2021 (§§ 146-153) 사건에서 재판소는 관련 헌법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선출된 조직을 구성,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구성원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의회 절차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 요건은 이 사건과 같이 구성원의 자격뿐 아니라 부적격 및 부적합 사유에 대한 의회의 판단 권한과 관련하여 헌법상 유보되어 있는 제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의회 절차에 “삼중 기준”이라는 보호장치가 있음을 고려하여, 제13조가 헌법적 권한 유보를 활용하여 내린 의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0. 투표권 행사와 관한 *Toplak and Mrak v. Slovenia*, 2021 (§§ 94-96) 사건에서 장애가 있는 두 번째 청구인은 투표를 했지만 장애인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투표소에서 겪은 실질적인 장애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청구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그의 요청에 건설적으로 대응해왔던 관할 선거 기관에 그의 요구 수용에 관한 모든 우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청구인이 투표권 행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일견 구제조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호성 없는 조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상 형태로 충분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구제조치로 제13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14조 및 제1의정서 제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P. 제4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제4의정서 제2조 - 이동의 자유

- “1. 합법적으로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주거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3. 공공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위생 및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4. 특정한 분야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들이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HUDOC 주제어

이동의 자유(P4-2-1)

291. 재판소는 두 사건에서 제4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92. 당국이 협약 제4의정서 제2조로 보장된 개인의 이동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가 제기된 경우, 관련인은 협약 13조에 근거하여 국가 법체계를 통해 문제가 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된 적절한 국내 법원을 통해 보호 절차를 가지고 관련 문제를 철저히 심사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iener v. Bulgaria*, 2006, § 138).

293. *Riener v. Bulgaria*, 2006 (§§ 138-143) 사건에서 재판소는 세금 미납으로 여행 금지를 당한 청구인을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 부재는 협약 제8조와 제4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의 세금 미납이 확인되자 법원과 행정 당국은 여행 금지를 자동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의 다른 상황은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지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공익과 청구자의 권리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비례적 조치인지 평가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절차는 협약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 내용을 심사하거나 적절한 구제조치를 얻을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잃었다.

294. *De Tommaso v. Italy* [GC], 2017 (§§ 181-185)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항소 법원 앞에서 강제 거주 명령에 따른 특별 감시가 불법이었다고 항소하는 실효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4의정서 제2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별 감독 명령의 조건과 비례성을 심사한 후 항소 법원은 문제가 된 조치를 파기했다.

Q.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³²

제4의정서 제4조 -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의 금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은 금지된다.”

³² 제4의정서 제4조에 대한 해설서(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의 금지) 참조.

HUDOC 주제어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의 금지(P4-4)

295. 재판소는 몇 가지 사건에서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 또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96. 재판소는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 금지에서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집행정지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Čonka v. Belgium*, 2002, §§ 79 이하). 재판소는 특히 제13조에 따른 실효적 구제조치 개념에는 협약에 반하고 효과를 되돌릴 수 없는 조치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체약국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받았지만 국가 당국이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이들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제13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297. *Čonka v. Belgium*, 2002 (§§ 77-85) 사건에서 재판소는 집단적 추방에 직면한 각 청구인들의 개별적 상황을 심사하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집행정지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은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체류 거부 결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사법 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5일 내에 해당 국가를 떠나야 했지만 국사원(Conseil d'État)의 청구 본안 심사 기한은 45일이었다. 통상적인 절차 또는 매우 긴급한 절차에 따른 집행정지 청구는 그 자체로는 집행정지 효과가 없었다.

298. 소말리아 및 에리트레아 국적 이민자가 공해상에서 체포되어 본국으로 추방된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201-207) 사건에서, 재판소는 추방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관할 당국에 제소하고 청구를 철저히 엄격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집행정지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협약 제3조와 및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이 승선한 군함에서 각 청구인의 개인 상황 검증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통역 또는 법률 고문이 승선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탈리아 군인들은 청구인들을 이탈리아로 데려간다고 믿게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리비아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299. *A.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2 (§§ 128-132) 사건에서 재판소는 즉결 추방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집행정지 효과를 가진 실효적 구제조치가 가용성과 관련하여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마케도니아법은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고의로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단체 입국을 시도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고 기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300. 청구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추방 절차가 협약 제2조 또는 제3조에 위배되는 형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추방 절차가 본질적으로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추방이 잠재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경우 협약은 국가에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구제조치를 보장할 절대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내 법원에서 자신의 청구를 철저히 조사하여 추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 279).

301.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 272-281) 사건에서 재판소는 목적국에서 제2조 또는 제3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집단적 추방에 대한 구제조치에 집행정지 효과가 없어도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입국 불허 명령에 대해서는 관련인이 60일 내에 치안판사에게 해당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치안판사가 관련 이민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집단적 성격에 기반하여 내린 추방 결정에 대한 청구를 심사할 자격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02. 스페인 국경을 집단으로 불법 월경하려고 했던 다수의 외국인을 국경에서 즉시 강제 추방 시킨 *N.D. and N.T. v. Spain* [GC], 2020 (§§ 241–24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추방 조치에 대한 구제조치가 부재했지만 제4의정서 제4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개별 추방 절차가 부재한 것은 청구인들이 공식 입국 절차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청구인이 목적국에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 청구는 처음부터 기각되었다.

R. 제12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3조

제12의정서 제1조 - 차별의 일반적 금지

“1. 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향유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2. 누구라도 제1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유로 공권력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HUDOC 주제어

차별 금지(P12-1)

303. *Toplak and Mrak v. Slovenia*, 2021 (§§ 88–91) 사건에서 재판소는 장애를 가진 청구인들이 투표소 접근과 국민투표에서 자유로운 비밀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실제 장애물에 대해 제기한 청구에 대한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것을 이유로 제12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용 가능한 구제조치 중 어느 것도 위반 혐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지 못했다. 예방 효과를 가진 법적 구제조치가 부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제를 모색하지 않고 위반 판결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재판소가 투표권 관련 일부 사건에서 금전적 보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건 정황에 비추어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국내 결정이 아니라 적절한 구제조치를 부여할 권한이 없는 국내 법원에 직면하였다.

S. 협약 제13조 및 제46조³³

³³ [협약 제46조에 대한 해설서](#)(판결의 구속력 및 집행) 참조.

제46조 - 구속력 및 판결 집행

- “1.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은 당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 2. 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각료위원회에 전달하고, 각료위원회는 그 집행을 감독한다.
- 3. 각료위원회가 보기에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당사자인 사건의 최종 판결 준수를 거부하면, 해당 당사국에 공식 통지한 후 위원회 재적 2/3인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해당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묻기 위해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 ...”

HUDOC 주제어

시범 판결(46) - 체계 문제(46) - 일반적인 조치(시범 판결)(46) - 개인적인 조치(시범 판결)(46) - 판결 준수(46-1) - 판결의 집행(46-2) - 개인적인 조치(46-2) - 일반적인 조치(46-2): 법령 개정(46-2); 규정 변경 (46 2); 판례 변경(46-2)

1. 시범 판결 절차

304. 시범 판결 절차의 맥락에서³⁴ 재판소는 구조적 또는 제도적 문제를 바로잡거나 확인된 불이행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이 시행해야 하는 구제를 확인한다.

305. *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210-231) 사건에서 재판소는 (실체적 측면에서)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과 관련하여 피청구국에 구치소 환경에 대한 청구에 대해 국내에서 예방적 및 보상적 구제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예방적 구제조치는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독립 당국 또는 법원에서 피구금자의 청구를 즉시 실효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보상적 구제조치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환경에서 재판을 받는 피구금자에게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과 유사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 또는 감형을 포함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이러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모든 피해자에게 구제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306. *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282-283)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불만족스러운 환경에 수감된 재소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예방적 구제조치의 형태로 일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받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정 시설을 감독할 특별 당국 설치를 제안했다. 기타 방법으로는 검찰과 같은 기존 당국 수준의 절차 수립, 구금 환경에 관한 불만을 수용하기 위한 기존 형태의 금지명령 구제 형성 등이 있다.

307. *Varga and Others v. Hungary*, 2015 (§§ 106-113) 사건에서는 피청구국 정부에 예방적 및 보상적 성격의 실효적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교도소 과밀 수용에 대해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도록 촉구했다. 재판소는 비구금형 징벌 조치를 늘리고 미결구금을 최소화하여 재소자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감형 또한 명백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열악한 구금 환경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되었다.

308. *Sukachov v. Ukraine*, 2020 (§§ 153-160) 사건에서 재판소는 구금 환경과 교도소 과밀에 대해 실효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예방적 및 보상적 구제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예방적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금 시설을 감독할 특별 당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보상적 구제조치의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구금 환경에서 수감했던 날수에 비례하여

³⁴ 재판소 규칙(Rules of Court)의 규칙 61 참조

형량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보상 형태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구금자가 더 이상 구금 상태에 있을 않은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구제 방법이 될 수 있다.

309. *Rutkowski and Others v. Poland*, 2015 (§§ 211-222)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에 민사 소송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 부재는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피청구국에 “절차 파편화” 원칙을 끝내고 “적절하고 충분한 구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310. 또한 *Rumpf v. Germany*, 2010, § 73, *Ümmühan Kaplan v. Turkey*, 2012, § 75, *Glykantzi v. Greece*, 2012, § 81, *Gazsó v. Hungary*, 2015, § 39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에 민사 소송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적 구제조치 부재는 제6조제1항과 연계하여 또는 그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피청구국에 국내에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고 실효적인 예방적 및 보상적 구제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311. 형사 소송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국내법에 부재하여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된 *Michelioudakis v. Greece*, 2012 (§§ 74-78)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적절한 구제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실효적 국내 구제조치(절차 처리를 촉진하는 예방적 구제 및 보상적 구제 또는 감형)를 도입하도록 요청했다.

312. 행정 소송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국내법에 부재하여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Vassilios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2010 (§§ 54-57)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실효적 국내 구제조치를 도입하도록 요청했다.

313. 재판소는 또한 소송 기간이 긴 사건에서 보상적 구제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주요 기준(*Burdov v. Russia (no. 2)*, 2009, § 99; 본 해설서의 164항 참조)을 지적한 바 있다. 소송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되면 비금전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강력하지만 반박 가능한 추정의 존재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03-204; *Burdov v. Russia (no. 2)*, 2009, § 100; 본 해설서의 170항 및 171항 참조)에 관해 지적했다.

314.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법 최종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된 *Burdov v. Russia (no. 2)*, 2009, §§ 138-141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사법적 결정 집행 지연 또는 미집행에 보상하는 실효적 구제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Yuriy Nikolayevich Ivanov v. Ukraine*³⁵, 2009, §§ 91-94; *Manushaqe Puto and Others v. Albania*, 2012, §§ 110-118; *Geras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219-226 참조.

315. 슬로베니아의 독립 후 영주권등록부에서 “삭제”된 주민의 거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가 부재하여 제8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된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2012 (§ 415)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국내 임시 보상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2. 판결의 집행

316. 판결의 집행 맥락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일반적인 조치 및/또는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17. 제2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으로 판결된(절차적 측면) *Abakarova v. Russia*, 2015 (§ 114)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어렸을 때 마을이 심각한 공습을 당해 가족을

³⁵ 협약 제6조제1항 및 제1의정서 제1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3조 위반

있고 부상을 입은 청구인에 대해 배상 조치를 포함하여 새로운 절차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318. *Tomov and Others v. Russia*, 2019 (§§ 190–197)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실체적 측면) 판결에 이어, 피청구국에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재소자 이송 환경에 대한 청구에서 국내에 실효적 구제조치(예방적 또는 보상적)가 부재한 것을 구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소는 청구 처리 방법, 실효적 구제조치가 사용되는 당국, 금전적 보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319. *J.M.B. and Others v. France*, 2020 (§§ 316)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열악한 구금 환경과 교도소 과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예방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일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320. 형사 소송 장기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조치 부재로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13조 위반으로 판결된 *Dimitrov and Hamanov v. Bulgaria*, 2011 (§ 131) 사건과 민사 소송 기간에 관한 *Finger v. Bulgaria*, 2011 (§ 133)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실효적 보상 구제조치 도입을 요청했다.

321. *Lukenda v. Slovenia*, 2005 (§ 98)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해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구제조치 범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구제조치를 추가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협약 제44조의 의미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됩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의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뒤 이은 대재판부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3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인용된 사건에 대한 언어별 번역본은 모두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 [A. v. the United Kingdom](#), no. 35373/97, ECHR 2002-X
- [A.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nos. 55798/16 and 4 Others, 5 April 2022
- [A.B. v. the Netherlands](#), no. 37328/97, 29 January 2002
- [A.B. and Others v. France](#), no. 11593/12, 12 July 2016
- [A.C. and Others v. Spain](#), no. 6528/11, 22 April 2014
- [A.M. v. the Netherlands](#), no. 29094/09, 5 July 2016
- [Abakarova v. Russia](#), no. 16664/07, 15 October 2015
- [Abdolkhani and Karimnia v. Turkey](#), no. 30471/08, 22 September 2009
- [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28 May 1985, Series A no. 94
- [Abramiuc v. Romania](#), no. 37411/02, 24 February 2009
- [Abuhmaid v. Ukraine](#), no. 31183/13, 12 January 2017
- [Airey v. Ireland](#), 9 October 1979, Series A no. 32
- [Akashev v. Russia](#), no. 30616/05, 12 June 2008
- [Akdivar and Others v. Turkey](#), 1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 [Akkad v. Turkey](#), no. 1557/19, 21 June 2022
- [Aksoy v. Turkey](#),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 [Al-Nashif v. Bulgaria](#), no. 50963/99, 20 June 2002
- [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no. 61498/08, ECHR 2010
- [Al-Shari and Others v. Italy](#) (dec.), no. 57/03, 5 July 2005

Albanese v. Italy, no. 77924/01, 23 March 2006
Aleksandr Andreyev v. Russia, no. 2281/06, 23 February 2016
Alekseyev v. Russia, nos. 4916/07 and 2 others, 21 October 2010
Allanazarova v. Russia, no. 46721/15, 14 February 2017
Altun v. Germany, no. 10308/83, Commission decision of 3 May 1983, Decisions and Reports (DR) 36
Amann v. Switzerland [GC], no. 27798/95, ECHR 2000-II
Amat-G Ltd and Mebagishvili v. Georgia, no. 2507/03, ECHR 2005-VIII
Ananyev and Others v. Russia, nos. 42525/07 and 60800/08, 10 January 2012
Anne-Marie Andersson v. Sweden, 27 August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Assenov and Others v. Bulgaria, 28 Octo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I
Association Innocence en Danger and Association Enfance et Partage v. France, nos. 15343/15 and 16806/15, 4 June 2020
Atanasov and Apostolov v. Bulgaria (dec.), nos. 65540/16 and 22368/17, 27 June 2017
Ataman v. Turkey, no. 46252/99, 27 April 2006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no. 27644/95, ECHR 2000-IV
Aydin v. Turkey, 25 Sept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B—

B.A.C. v. Greece, no. 11981/15, 13 October 2016
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no. 1543/06, 3 May 2007
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26 August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Bamouhammad v. Belgium, no. 47687/13, 17 November 2015
Bara and Kola v. Albania, nos. 43391/18 and 17766/19, 12 October 2021
Barbotin v. France, no. 25338/16, 19 November 2020
Bastys v. Lithuania, no. 80749/17, 4 February 2020
Baumann v. France, no. 33592/96, ECHR 2001-V
Bazorkina v. Russia, no. 69481/01, 27 July 2006
Bati and Others v. Turkey, nos. 33097/96 and 57834/00, ECHR 2004-IV
Baysayeva v. Russia, no. 74237/01, 5 April 2007
Beck v. Norway, no. 26390/95, 26 June 2001
Benediktov v. Russia, no. 106/02, 10 May 2007
Bensaid v. the United Kingdom, no. 44599/98, ECHR 2001-I
Bergmann v. the Czech Republic, no. 8857/08, 27 October 2011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no. 41288/15, 14 January 2020
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nos. 29026/06 and 11 others, 17 March 2020
Bottaro v. Italy, no. 56298/00, 17 July 2003
Boychev and Others v. Bulgaria, no. 77185/01, 27 January 2011
Boyle and Rice v. the United Kingdom, 27 April 1988, Series A no. 131
Brincat and Others v. Malta, nos. 60908/11 and 4 others, 24 July 2014
Brualla Gómez de la Torre v. Spain, 19 Dec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Brudan v. Romania, no. 75717/14, 10 April 2018
Bubbins v. the United Kingdom, no. 50196/99, ECHR 2005-II
Bucur and Toma v. Romania, no. 40238/02, 8 January 2013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15339/02 and 4 others, ECHR 2008
Bulgakov v. Russia, no. 20159/15, 23 June 2020
Burdov v. Russia (no. 2), no. 33509/04, ECHR 2009
Büyükdag v. Turkey, no. 28340/95, 21 December 2000

—C—

C. v. the United Kingdom, no. 9276/81, Commission decision of 17 November 1983, DR 35
C.N. v. the United Kingdom, no. 4239/08, 13 November 2012
C.N. and v. v. France, no. 67724/09, 11 October 2012
Çaçan v. Turkey, no. 33646/96, 26 October 2004
Camenzind v. Switzerland, 16 Dec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Campbell and Fell v. the United Kingdom, 28 June 1984, Series A no. 80
Caraher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4520/94, ECHR 2000-I
Cataldo v. Italy (dec.), no. 45656/99, ECHR 2004-VI
Cauchi v. Malta, no. 14013/19, 25 March 2021
Çelik and İmret v. Turkey, no. 44093/98, 26 October 2004
Cenbauer v. Croatia (dec.), no. 73786/01, 5 February 2004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no. 47848/08, ECHR 2014
Chahal v. the United Kingdom, 15 Nov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Charzyński v. Poland (dec.), no. 15212/03, ECHR 2005-V
Chember v. Russia, no. 7188/03, ECHR 2008
Chernega and Others v. Ukraine, no. 74768/10, 18 June 2019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no. 13216/05, ECHR 2015
Chitayev v. Russia, no. 59334/00, 18 January 2007
Chizzotti v. Italy (dec.), no. 15535/02, 26 May 2005
Chizzotti v. Italy, no. 15535/02, 2 February 2006
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895/95, ECHR 2002-VI
Clasens v. Belgium, no. 26564/16, 28 May 2019
Cocchiarella v. Italy [GC], no. 64886/01, ECHR 2006-V
Colozza and Rubinat v. Italy, nos. 9024/80 and 9317/81, Commission decision of 9 July 1982, DR 28
Čonka v. Belgium, no. 51564/99, ECHR 2002-I
Costello-Roberts v. the United Kingdom, 25 March 1993, Series A no. 247-C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11603/85, Commission decision of 20 January 1987, DR 50
Crociani and Others v. Italy, nos. 8603/79 and 3 others, Commission decision of 18 December 1980, DR 22
Csepyová v. Slovakia (dec.), no. 67199/01, 14 May 2002
Csüllög v. Hungary, no. 30042/08, 7 June 2011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ECHR 2001-IV

—D—

D v. Bulgaria, no. 29447/17, 20 July 2021
D.M. v. Greece, no. 44559/15, 16 February 2017
D.M. v. Poland, no. 13557/02, 14 October 2003
D.P. and J.C. v. the United Kingdom, no. 38719/97, 10 October 2002
Daddi v. Italy (dec.), no. 15476/09, 2 June 2009
Davydov and Others v. Russia, no. 75947/11, 30 May 2017
De Clerck v. Belgium, no. 34316/02, 25 September 2007
De Jong, Baljet and Van Den Brink v. the Netherlands, 22 May 1984, Series A no. 77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no. 22689/07, ECHR 2012
De Tommaso v. Italy [GC], no. 43395/09, 23 February 2017
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18 June 1971, Series A no. 12
Delle Cave and Corrado v. Italy, no. 14626/03, 5 June 2007

Di Sante v. Italy (dec.), no. 56079/00, 24 June 2004
Dikaïou and Others v. Greece, no. 77457/13, 16 July 2020
Dimitrov v. Bulgaria (dec.), no. 55861/00, 9 May 2006
Dimitrov and Hamanov v. Bulgaria, nos. 48059/06 and 2708/09, 10 May 2011
Djavit An v. Turkey, no. 20652/92, ECHR 2003-III
Doğan Altun v. Turkey, no. 7152/08, 26 May 2015
Domján v. Hungary (dec.), no. 5433/17, 14 November 2017
Doran v. Ireland, no. 50389/99, ECHR 2003-X
Đorđević v. Croatia, no. 41526/10, ECHR 2012
Driza v. Albania, no. 33771/02, ECHR 2007-V
Džinić v. Croatia, no. 38359/13, 17 May 2016

—E—

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33218/96, 26 November 2002
E.H. v. France, no. 39126/18, 22 July 2021
Edward and Cynthia Zammit Maempel v. Malta, no. 3356/15, 15 January 2019
Efstratiou v. Greece,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Ekşi and Ocak v. Turkey, no. 44920/04, 23 February 2010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no. 39630/09, ECHR 2012
Engels v. Russia, no. 61919/16, 23 June 2020
Esposito v. Italy (dec.), no. 34971/02, 5 April 2007
Etxeberria and Others v. Spain, nos. 35579/03 and 3 others, 30 June 2009

—F—

Ferre Gisbert v. Spain, no. 39590/05, 13 October 2009
Finger v. Bulgaria, no. 37346/05, 10 May 2011
Frasik v. Poland, no. 22933/02, ECHR 2010
Frérot v. France, no. 70204/01, 12 June 2007

—G—

G.B. and Others v. Turkey, no. 4633/15, 17 October 2019
G.H.H. and Others v. Turkey, no. 43258/98, ECHR 2000-VIII
Gagliano Giorgi v. Italy, no. 23563/07, ECHR 2012 (extracts)
Gahramanli and Others v. Azerbaijan, no. 36503/11, 8 October 2015
Galan v. Italy (dec.), no. 63772/16, 18 May 2021
Galanopoulos v. Greece, no. 11949/09, 19 December 2013
Galea and Pavia v. Malta, nos. 77209/16 and 77225/16, 11 February 2020
Gazsó v. Hungary, no. 48322/12, 16 July 2015
Gebremedhin [Gaberamadhien] v. France, no. 25389/05, ECHR 2007-II
Gerasimov and Others v. Russia, nos. 29920/05 and 10 others, 1 July 2014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no. 23458/02, ECHR 2011
Giuseppina and Orestina Procaccini v. Italy [GC], no. 65075/01, 29 March 2006
Glas Nadezhda EOOD and Elenkov v. Bulgaria, no. 14134/02, 11 October 2007
Glykantzi v. Greece, no. 40150/09, 30 October 2012
Gökçe and Demirel v. Turkey, no. 51839/99, 22 June 2006
Golder v. the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75, Series A no. 18

Gömi and Others v. Turkey, no. 35962/97, 21 December 2006
Gongadze v. Ukraine, no. 34056/02, ECHR 2005-XI
Gorlov and Others v. Russia, nos. 27057/06 and 2 others, 2 July 2019
Gouarré Patte v. Andorra, no. 33427/10, 12 January 2016
Grosaru v. Romania, no. 78039/01, ECHR 2010
Gusinskiy v. Russia (dec.), no. 70276/01, 22 May 2003
Gustafsson v. Sweden, 25 April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I

—H—

Halford v. the United Kingdom, 25 June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I
Hartman v. the Czech Republic, no. 53341/99, ECHR 2003-VIII
Hasan and Chaush v. Bulgaria [GC], no. 30985/96, ECHR 2000-XI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36022/97, ECHR 2003-VIII
Hiernaux v. Belgium, no. 28022/15, 24 January 2017
Hilal v. the United Kingdom, no. 45276/99, ECHR 2001-II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no. 27765/09, ECHR 2012
Hokkanen v. Finland, 23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9-A
Horvat v. Croatia, no. 51585/99, ECHR 2001-VIII
Hugh Jordan v. the United Kingdom, no. 24746/94, 4 May 2001
Hüseyin Esen v. Turkey, no. 49048/99, 8 August 2006
Hüsnüye Tekin v. Turkey, no. 50971/99, 25 October 2005

—I—

I.M. v. France, no. 9152/09, 2 February 2012
Iatridis v. Greece [GC], no. 31107/96, ECHR 1999-II
İçyer v. Turkey (dec.), no. 18888/02, ECHR 2006-I
İlhan v. Turkey [GC], no. 22277/93, ECHR 2000-VII
Ilyushkin and Others v. Russia, nos. 5734/08 and 28 others, 17 April 2012
Imakayeva v. Russia, no. 7615/02, ECHR 2006-XIII
Iordache v. Romania, no. 6817/02, 14 October 2008
Iorgov v. Bulgaria, no. 40653/98, 11 March 2004
Iovchev v. Bulgaria, no. 41211/98, 2 February 2006
İrfan Güzel v. Turkey, no. 35285/08, 7 February 2017
Isayeva v. Russia, no. 57950/00, 24 February 2005
Ismayilov v. Azerbaijan, no. 4439/04, 17 January 2008
Ivan Atanasov v. Bulgaria, no. 12853/03, 2 December 2010

—J—

J.M.B. and Others v. France, nos. 9671/15 and 31 others, 30 January 2020
Jabari v. Turkey, no. 40035/98, ECHR 2000-VIII
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86, Series A no. 98
Janowiec and Others v. Russia (dec.), nos. 55508/07 and 29520/09, 5 July 2011
Jaremowicz v. Poland, no. 24023/03, 5 January 2010
Januškevičienė v. Lithuania, no. 69717/14, 3 September 2019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5 July 2016
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no. 9697/82, Commission's report of 5 March 1995, Series B no. 95

—K—

Kadiķis v. Latvia (no. 2), no. 62393/00, 4 May 2006
Kadubec v. Slovakia, 2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
Kaić and Others v. Croatia, no. 22014/04, 17 July 2008
Kamasinski v. Austria, 19 December 1989, Series A no. 168
Karabeyoğlu v. Turkey, no. 30083/10, 7 June 2016
Karaçay v. Turkey, no. 6615/03, 27 March 2007
Karácsony and Others v. Hungary [GC], nos. 42461/13 and 44357/13, 17 May 2016
Kaya v. Turkey, 19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Kaya and Seyhan v. Turkey, no. 30946/04, 15 September 2009
Kayasu v. Turkey, nos. 64119/00 and 76292/01, 13 November 2008
Kangasluoma v. Finland, no. 48339/99, 20 January 2004
Karandja v. Bulgaria, no. 69180/01, 7 October 2010
Keegan v. the United Kingdom, no. 28867/03, ECHR 2006-X
Keenan v. the United Kingdom, no. 27229/95, ECHR 2001-III
Kell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30054/96, 4 May 2001
Kenedi v. Hungary, no. 31475/05, 26 May 2006
Khashiyev and Akayeva v. Russia, nos. 57942/00 and 57945/00, 24 February 2005
Khadisov and Tsechoyev v. Russia, no. 21519/02, 5 February 2009
Khan v. the United Kingdom, no. 35394/97, ECHR 2000-V
Khider v. France, no. 39364/05, 9 July 2009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no. 16483/12, 15 December 2016
Kılıç v. Turkey, no. 22492/93, ECHR 2000-III
Kiril Zlatkov Nikolov v. France, nos. 70474/11 and 68038/12, 10 November 2016
Klass and Others v. Germany, 6 September 1978, Series A no. 28
Konstas v. Greece, no. 53466/07, 24 May 2011
Konti-Arvantini v. Greece, no. 53401/99, 10 April 2003
Kontrová v. Slovakia, no. 7510/04, 31 May 2007
Kopczynski v. Poland, no. 28863/95, Commission decision of 1 July 1998
Krasuski v. Poland, no. 61444/00, ECHR 2005-V
Kudła v. Poland [GC], no. 30210/96, ECHR 2000-XI
Kudličk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21588/12, 3 March 2015
Kuppinger v. Germany, no. 62198/11, 15 January 2015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no. 26828/06, ECHR 2012
Kurt v. Turkey, 25 Ma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L—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nos. 57818/09 and 14 others, 7 February 2017
Leander v. Sweden, 26 March 1987, Series A no. 116
Libert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58243/00, 1 July 2008
Lindberg v. Sweden (dec.), no. 48198, 15 January 2004
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8 July 1986, Series A no. 102
Lonić v. Croatia, no. 8067/12, 4 December 2014
Lukenda v. Slovenia, no. 23032/02, ECHR 2005-X
Luli and Others v. Albania, nos. 64480/09 and 5 others, 1 April 2014
Luluyev and Others v. Russia, no. 69480/01, ECHR 2006-XIII

—M—

M. and Others v. Bulgaria, no. 41416/08, 26 July 2011
M.A. v. Cyprus, no. 41872/10, ECHR 2013
M.K. and Others v. Poland, nos. 40503/17 and 2 others, 23 July 2020
M.S. v. Sweden, 27 August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M.S.S. v. Belgium and Greece [GC], no. 30696/09, ECHR 2011
Macready v. the Czech Republic, nos. 4824/06 and 15512/08, 22 April 2010
Mahmut Kaya v. Turkey, no. 22535/93, ECHR 2000-III
Makaratzis v. Greece [GC], no. 50385/99, ECHR 2004-XI
Mandić and Jović v. Slovenia, nos. 5774/10 and 5985/10, 20 October 2011
Manushaqe Puto and Others v. Albania, nos. 604/07 and 3 others, 31 July 2012
Margareta and Roger Andersson v. Sweden, 25 February 1992, Series A no. 226-A
Marshall and Others v. Malta, no. 79177/16, 11 February 2020
Martins Castro and Alves Correia de Castro v. Portugal, no. 33729/06, 10 June 2008
Maskhadova and Others v. Russia, no. 18071/05, 6 June 2013
Maslák v. Slovakia (no. 2), no. 38321/17, 31 March 2022
Matos e Silva, Lda., and Others v. Portugal, 1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Maurice v. France [GC], no. 11810/03, ECHR 2005-IX
McDonnell v. the United Kingdom, no. 19563/11, 9 December 2014
McFarlane v. Ireland [GC], no. 31333/06, 10 September 2010
McGlinch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50390/99, ECHR 2003-V
McKerr v. the United Kingdom, no. 28883/95, ECHR 2001-III
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24 February 1995, Series A no. 307-B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no. 71156/01, 3 May 2007
Mendrei v. Hungary (dec.), no. 54927/15, 19 June 2018
Menesheva v. Russia, no. 59261/00, ECHR 2006-III
Menteş and Others v. Turkey, 28 Nov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Metaxas v. Greece, no. 8415/02, 27 May 2004
Metin Turan v. Turkey, no. 20868/02, 14 November 2006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no. 45701/99, ECHR 2001-XII
Michelioudakis v. Greece, no. 54447/10, 3 April 2012
Mifsud v. France (dec.) [GC], no. 57220/00, ECHR 2002-VIII
Mik and Jovanović v. Serbia (dec.), nos. 9291/14 and 63798/14, 23 March 2021
Mir Isfahani v. the Netherlands (dec.), no. 31252/03, 31 August 2008
Mosendz v. Ukraine, no. 52013/08, 17 January 2013
Moustahi v. France, no. 9347/14, 25 June 2020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no. 11138/10, 23 February 2016
Mubilanzila Mayeka and Kaniki Mitunga v. Belgium, no. 13178/03, ECHR 2006-XI
Mugemangango v. Belgium [GC], no. 310/15, 17 July 2020
Müller v. Austria, no. 5849/72, Commission decision of 16 December 1974, DR 1
Murray v. the United Kingdom, 28 October 1994, Series A no. 300-A
Musa and Others v. Bulgaria, no. 61259/00, 11 January 2007
Müslim v. Turkey, no. 53566/99, 26 April 2005

—N—

N. v. Sweden, no. 11366/85, Commission decision of 16 October 1986, DR 50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and 8697/15, 13 February 2020

Nada v. Switzerland [GC], no. 10593/08, ECHR 2012
Nasr and Ghali v. Italy, no. 44883/09, 23 February 2016
Nastou v. Greece (no. 2), no. 16163/02, 15 July 2005
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nos. 36925/10 and 5 others, 27 January 2015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no. 41720/13, 25 June 2019
Nikitin and Others v. Estonia, nos. 23226/16 and 6 others, 29 January 2019
Nikolova v. Bulgaria [GC], no. 31195/96, ECHR 1999-II
Nogolica v. Croatia (dec.), no. 77784/01, ECHR 2002-VIII
Norbert Sikorski v. Poland, no. 17599/05, 22 October 2009
Nuri Kurt v. Turkey, no. 37038/97, 29 November 2005
Nuvoli v. Italy, no. 41424/98, 16 May 2002

—O—

O’Keeffe v. Ireland [GC], no. 35810/09, ECHR 2014
Olisov and Others v. Russia, nos. 10825/09 and 2 others, 2 May 2017
Olivieri and Others v. Italy, nos. 17708/12 and 3 others, 25 February 2016
Olsson v. Sweden (no. 1), 24 March 1988, Series A no. 130
Öneryıldız v. Turkey [GC], no. 48939/99, ECHR 2004-XII
OOO Flavus and Others v. Russia, nos. 12468/15 and 2 others, 23 June 2020
Orhan v. Turkey, no. 25656/94, 18 June 2002
Özgür Radyo-Ses Radyo Televizyon Yayın Yapım Ve Tanıtım A.Ş. v. Turkey (no. 1), nos. 64178/00 and 4 others, 30 March 2006
Özpinar v. Turkey, no. 20999/04, 19 October 2010

—P—

Paksas v. Lithuania [GC], no. 34932/04, ECHR 2011
Panju v. Belgium, no. 18393/09, 28 October 2014
Panteleyenکو v. Ukraine, no. 11901/02, 29 June 2006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no. 46477/99, ECHR 2002-II
Paulino Tomás v. Portugal (dec.), no. 58698/00, ECHR 2003-VIII
Paunović and Milivojević v. Serbia, no. 41683/06, 24 May 2016
Payet v. France, no. 19606/08, 20 January 2011
Peck v. the United Kingdom, no. 44647/98, ECHR 2003-I
Peev v. Bulgaria, no. 64209/01, 26 July 2007
Petkov and Others v. Bulgaria, nos. 77568/01 and 2 others, 11 June 2009
Pine Valley Developments Ltd and Others v. Ireland, no. 12742/87, Commission decision of 3 May 1989, DR 61
Pine Valley Developments Ltd and Others v. Ireland, 29 November 1991, Series A no. 222
Pizzetti v. Italy, no. 12444/86, Commission’s report of 10 December 1991
Plattform “Arzte für das Leben” v. Austria, 21 June 1988, Series A no. 139
Poghosyan and Baghdasaryan v. Armenia, no. 22999/06, ECHR 2012
Polgar v. Romania, no. 39412/19, 20 July 2021
Posevini v. Bulgaria, no. 63638/14, 19 January 2017
Powell and Rayner v. the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90, Series A no. 172
Prince Hans-Adam II of Liechtenstein v. Germany [GC], no. 42527/98, ECHR 2001-VIII

—R—

R. v. the United Kingdom, no. 10496/83, Commission decision of 14 May 1984, DR 38
R.D. v. France, no. 34648/14, 16 June 2016
Ramadhi and Others v. Albania, no. 38222/02, 13 November 2007
Ramirez Sanchez v. France [GC], no. 59450/00, ECHR 2006-IX
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no. 52391/99, ECHR 2007-II
Ratushna v. Ukraine, no. 17318/06, 2 December 2010
Reynolds v. the United Kingdom, no. 2694/08, 13 March 2012
Riccardi Pizzati v. Italy [GC], no. 62361/00, 29 March 2006
Riener v. Bulgaria, no. 46343/99, 23 May 2006
Rišková v. Slovakia, no. 58174/00, 22 August 2006
Riza and Others v. Bulgaria, nos. 48555/10 and 48377/10, 13 October 2015
Rizvanov v. Azerbaijan, no. 31805/06, 17 April 2012
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no. 32555/96, ECHR 2005-X
Roman Zakharov v. Russia [GC], no. 47143/06, ECHR 2015
Rotaru v. Romania [GC], no. 28341/95, ECHR 2000-V
Roth v. Germany, nos. 6780/18 and 30776/18, 22 October 2020
Rumpf v. Germany, no. 46344/06, 2 September 2010
Ruslan Yakovenko v. Ukraine, no. 5425/11, ECHR 2015
Russian Conservative Party of Entrepreneurs and Others v. Russia, nos. 55066/00 and 55638/00, ECHR 2007-I
Rutkowski and Others v. Poland, no. 72287/10, 7 July 2015

—S—

S.K. v. Russia, no. 52722/15, 14 February 2017
S.W. v. the United Kingdom, no. 87/18, 22 June 2021
Sabou and Pircalab v. Romania, no. 46572/99, 28 September 2004
Saccoccia v. Austria (dec.), no. 69917/01, 5 July 2007
Saggio v. Italy, no. 41879/98, 25 October 2001
Sakkal and Fares v. Turkey (dec.), no. 52902/15, 7 June 2016
Salah Sheek v. the Netherlands, no. 1948/04, 11 January 2007
Salman v. Turkey [GC], no. 21986/93, ECHR 2000-VII
Sampanis and Others v. Greece, no. 32526/05, 5 June 2008
Sargsyan v. Azerbaijan [GC], no. 40167/06, ECHR 2015
Saygili v. Turkey (dec.), no. 42914/16, 11 July 2017
Šečić v. Croatia, no. 40116/02, 31 May 2007
Segerstedt-Wiberg and Others v. Sweden, no. 62332/00, ECHR 2006-VII
Scoppola v. Italy (no. 2) [GC], no. 10249/03, 17 September 2009
Scordino v. Italy (no. 1) [GC], no. 36813/97, ECHR 2006-V
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no. 36378/02, ECHR 2005-III
Shanaghan v. the United Kingdom, no. 37715/97, 4 May 2001
Shmelev v. Russia (dec.), nos. 41743/17 and 16 others, 17 March 2020
Silv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5 March 1983, Series A no. 61
Simaldone v. Italy, no. 22644/03, 31 March 2009
Singh and Others v. Belgium, no. 33210/11, 2 October 2012
Sitkov v. Russia (dec.), no. 55531/00, 9 November 2004
Slaviček v. Croatia (dec.), no. 20862/02, ECHR 2002-VII
Slimani v. France, no. 57671/00, ECHR 2004-IX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nos. 33985/96 and 33986/96, ECHR 1999-VI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7 July 1989, Series A no. 161
Söylemez v. Turkey, no. 46661/99, 21 September 2006
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23 September 1982, Series A no. 52
Stanev v. Bulgaria [GC], no. 36760/06, ECHR 2012
Stelian Roşca v. Romania, no. 5543/06, 4 June 2013
Stella and Others v. Italy (dec.), nos. 49169/09 and 10 others, 16 September 2014
Stewart-Brady v. the United Kingdom, nos. 27436/95 and 28406/95, Commission decision of 2 July 1997, DR 90-B
Stoica v. Romania, no. 42722/02, 4 March 2008
Strack and Richter v. Germany (dec.), nos. 28811/12 and 50303/12, 5 July 2016
Stratégies et Communications and Dumoulin v. Belgium, no. 37370/97, 15 July 2002
Sukachov v. Ukraine, no. 14057/17, 30 January 2020
Sultan Öner and Others v. Turkey, no. 73792/01, 17 October 2006
Supreme Holy Council of the Muslim Community v. Bulgaria, no. 39023/97, 16 December 2004
Sürmeli v. Germany [GC], no. 75529/01, ECHR 2006-VII
Swedish Engine Drivers' Union v. Sweden, 6 February 1976, Series A no. 20
Syrkin v. Russia (dec.), no. 44125/98, 25 November 1999

—T—

T.I.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3844/98, ECHR 2000-III
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GC], no. 28945/95, ECHR 2001-V
Tag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26562/07 and 6 others, 13 April 2017
Tanrikulu v. Turkey [GC], no. 23763/94, ECHR 1999-IV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2), 26 November 1991, Series A no. 217
Times Newspapers Ltd and Andrew Neil v. the United Kingdom, no. 14644/89, Commission's report of 8 October 1991
Titan Total Group S.R.L. v. Republic of Moldova, no. 61458/08, 6 July 2021
Tomov and Others v. Russia, nos. 18255/10 and 5 others, 9 April 2019
Toplak and Mrak v. Slovenia, nos. 34591/19 and 42545/19, 26 October 2021
Torreggiani and Others v. Italy, nos. 43517/09 and 6 others, 8 January 2013
Tregubenko v. Ukraine (dec.), no. 61333/00, 21 October 2003
Tsirlis and Kouloumpas v. Greece, 29 Ma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I
Tsonyo Tsonov v. Bulgaria, no. 33726/03, 1 October 2009
Tüm Haber Sen and Çınar v. Turkey, no. 28602/95, 21 February 2006

—U—

Ulemek v. Croatia, no. 21613/16, 31 October 2019
Ümmühan Kaplan v. Turkey, no. 24240/07, 20 March 2012

—V—

Valada Matos das Neves v. Portugal, no. 73798/13, 29 October 2015
Valaitis v. Lithuania, no. 39375/19, 17 January 2023
Valsamis v. Greece,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Varga and Others v. Hungary, nos. 14097/12 and 5 others, 10 March 2015
Vasilev and Doycheva v. Bulgaria, no. 14966/04, 31 May 2012
Vassilios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no. 50973/08, 21 December 2010

Velikovi and Others v. Bulgaria, nos. 43278/98 and 8 others, 15 March 2007
Vereinigung demokratischer Soldaten Österreichs and Gubi v. Austria, 1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2
Verein Alternatives Lokalradio Bern and Verein Radio Dreyeckland Basel v. Switzerland, no. 10746/84, Commission decision of 16 October 1986, DR 49
Verrascina and Others v. Italy, nos. 15566/13 and 5 others, 28 April 2022
Vidas v. Croatia, no. 40383/04, 3 July 2008
Vilvarajah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30 October 1991, Series A no. 215
Vlad and Others v. Romania, nos. 40756/06 and 2 others, 26 November 2013
Vladimir Kharitonov v. Russia, no. 10795/14, 23 June 2020
Volodya Avetisyan v. Armenia, no. 39087/15, 3 May 2022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preliminary objection) [GC], nos. 17153/11 and 29 others, 25 March 2014

—W—

W. v. the United Kingdom, 8 July 1987, Series A no. 121
Wainwright v. the United Kingdom, no. 12350/04, ECHR 2006-X
Walter v. Italy (dec.), no. 18059/06, 11 July 2006
Wasserman v. Russia (no. 2), no. 21071/05, 10 April 2008
Wendenburg and Others v. Germany (dec.), no. 71630/01, ECHR 2003-II
Wille v. Liechtenstein [GC], no. 28396/95, ECHR 1999-VII

—X—

X and Others v. Russia, nos. 78042/16 and 66158/14, 14 January 2020
X. and Y. v. the Netherlands, 26 March 1985, Series A no. 91

—Y—

Yarashonen v. Turkey, no. 72710/11, 24 June 2014
Yaşa v. Turkey, 2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
Yassar Hussain v. the United Kingdom, no. 8866/04, ECHR 2006-III
Yengo v. France, no. 50494/12, 21 May 2015
Yoh-Ekale Mwanje v. Belgium, no. 10486/10, 20 December 2011
Young, James and Webster v. the United Kingdom, nos. 7601/76 and 7806/77, Commission's report of 14 December 1979, Series B no. 39
Younger v. the United Kingdom (dec.), no. 57420/00, ECHR 2003-I
Yuriy Nikolayevich Ivanov v. Ukraine, no. 40450/04, 15 October 2009
Yuriy Romanov v. Russia, no. 69341/01, 25 October 2005

—Z—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29392/95, ECHR 2001-V
Z. and E. v. Austria, no. 10153/82, Commission decision of 13 October 1986, DR 49
Zarakolu and Belge Uluslararası Yayıncılık v. Turkey, nos. 26971/95 and 37933/97, 13 July 2004
Zavoloka v. Latvia, no. 58447/00, 7 July 2009
Zazanis v. Greece, no. 68138/01, 18 November 2004
Zelilof v. Greece, no. 17060/03, 24 May 2007